

2019

정책연구 2019-24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 방향

연구진 김시백 · 황영모 · 배균기 · 안동신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19-24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 방향



연 구 진

연구책임 김 시 백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황 영 모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배 균 기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안 동 신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구관리 코드 : 19JU1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1. 연구의 내용	6
2. 연구의 방법	7
제2장 국내외 사회적금융 현황	9
제1절 사회적금융의 의의와 필요성	11
1. 사회적금융의 정의 및 특성	11
2. 사회적금융 유형	14
3. 사회적금융상품의 유형 분류	16
제2절 국내 사회적금융 현황	19
1.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지원 방식	19
2.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23
3. 정책 동향	28
4. 타 지역 사례	33
5. 유사 금융 제도 사례(농업금융)	37
제3절 해외 사회적금융 현황	40
1. 해외 사회적금융 유형 분류	40
2. 정부 재정 중심의 지원 체계	41
3. 민간 기반 지원 체계	42
4. 퀘벡의 연대기금	44
제4절 시사점	47

제3장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현황	53
제1절 전라북도 사회적금융의 정의와 범위	55
1. 사회적금융의 일반적인 정의	55
2. 전라북도 사회적금융의 정책적 범위	56
제2절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 체계 진단	58
1. 전라북도 금융산업 현황	58
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자금 조달 현황	61
3.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인식 현황	63
4. 금융 지원이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68
제3절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발전 방향	75
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75
2.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향	77
제4장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방안	81
제1절 기본 방향	83
1.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필요성 검토	83
2. 사회적경제기금의 조성 가능성 검토	86
3.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검토	88
제2절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방안	94
1. 기본 방향	94
2.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주체	96
제5장 전북형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 방안	99
제1절 기본 방향	101
1.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성원	101
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 로드맵	103
제2절 세부 사업 내용	106
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106
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 수립	108

3. 사회적경제 민간 자조기금 조성 지원	110
4.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	110
5. 전북형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구축·운영	112
6.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실태조사	113
7. 사회적금융 협의체 운영	114
8.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공시제	115
9. 사회적금융 전문 컨설턴트 육성	117
10. 전북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117
11.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19
12. 전북 사회적경제 클라우드 펀딩 조성 지원	120
13.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	121
14. 전북 (사회적경제)지역화폐 도입	123
부록	125
〈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 〉	127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금융 관련 내용 〉	131
참고문헌	137

표 목 차 | Contents

[표 2-1] 마이크로파이낸스 유형	14
[표 2-2] 사회적경제기업 활용 가능 금융상품	18
[표 2-3] 미소금융 대출조건	20
[표 2-4]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유형	22
[표 2-5] 국내 민간 은행의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지원 실적	23
[표 2-6] 국내 민간 은행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유형별 실적	23
[표 2-7] 지방기금법 민간위탁 관련 조항 개정 전후 대조표	35
[표 2-8] 광역 지자체 단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추진 현황	36
[표 2-9] 해외 사회적금융 목적별 사례	40
[표 2-10] 전통금융거래소와 사회적금융거래소 비교	43
[표 2-11] 사회적금융거래소 유형	43
[표 2-12] 캐나다 퀘벡주 기금 유형	48
[표 3-1] 전라북도 금융기관 현황	58
[표 3-2]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 자금 조달 현황	61
[표 3-3]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기간별 자금 조달 현황	62
[표 3-4]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 규모별 자금 조달 현황	62
[표 3-5] 수정 IP Matrix(I) 구조	64
[표 3-6] 수정 IP Matrix(I)에 따른 전북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평가	65
[표 3-7] 수정 IP Matrix(II) 구조	66
[표 3-8] 수정 IP Matrix(I)에 따른 전북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평가	67
[표 3-9] 구조방정식 추정 결과(외생변수를 지원체계로 둔 경우)	70
[표 3-10] 요인별 성과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외생변수를 지원체계로 둔 경우)	71
[표 3-11] 구조방정식 추정 결과(외생변수를 금융지원으로 둔 경우)	72
[표 3-12] 요인별 성과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외생변수를 금융지원으로 둔 경우)	74
[표 3-13]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지원 방식	78
[표 3-14]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방식	78

[표 4-1] 사회적기업 대상 자본조달방식별 장단점	83
[표 4-2] 기금 조성 주도 주제별 개요	85
[표 4-3] 전라북도 기금 운용 현황	87
[표 4-4] 기존 기금의 사회적경제기금으로서 활용 가능성 검토	90
[표 4-5] 기금 조성 대안별 장단점	93
[표 4-6] 단계별 기금 운영 방안	97
[표 4-7]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의 법적 형태별 장단점	98
 [표 5-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 로드맵	 105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사회적금융의 범위	3
[그림 1-2]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목표 및 발전전략	5
[그림 2-1] 사회적금융시스템 구조	11
[그림 2-2] 사회적금융 유형별 중점 지원 대상	19
[그림 2-3] (재)한국사회투자 사업 영역	25
[그림 2-4] 중앙정부의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29
[그림 2-5] 사회적금융 자금 확대 계획	30
[그림 3-1]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의 위치	55
[그림 3-2] 사회적금융의 범위	56
[그림 3-3] 전북 예금은행 여수신 추이	59
[그림 3-4] 전금 비예금은행 여수신 추이	60
[그림 3-5] 비예금은행 금융기관별 자금 초과대출액	61
[그림 3-6] 사회적경제조직 요인간 구조	68
[그림 3-7]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요인간 관계도	71
[그림 3-8] 금융지원과 사회적경제 요인간 관계도	73
[그림 3-9]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생태계 진단	77
[그림 3-10]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생태계 활성화 방향	80
[그림 5-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성	102
[그림 5-2] 기금 운용 계획 수립 체계	110
[그림 5-3] 전북형 사회적가치평가체계 추진 절차	114
[그림 5-4]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체계	121

1

장

서론

Jeonbuk Institute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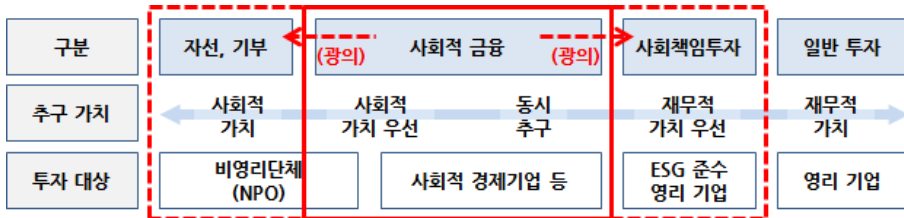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사회적금융(Social Finance)은 경제적 이윤 추구를 최우선시 하는 민간 금융과는 달리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경제적 이익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 형태로 최근 사회적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사회적 금융의 유형은 정부 보조나 민간 기부를 통한 자금 지원 유형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까지 포함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회적금융의 개념이 사회공동체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 수요자에 대한 대출 및 투자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그림 1-1] 사회적금융의 범위

-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의 '2015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실태조사' 결과, 자금조달 과정에서 담보, 신용보증 등의 높은 진입장벽, 사회적 가치 심사기준 모호, 담보 위주의 심사, 정보 부족 등으로 일반 기업에 비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제도권 금융기관 역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대출 기준을 분명하게 갖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가 일반 기업에 비해 까다로운 상황임.
-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분야의 사회적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
- 중앙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 사회적금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정책과제 중 하나로 '금융접근성 제고'를 선정함.
- 2018년 2월에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지자체 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 지원 목적의 정책자금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고 있음(서울, 경기, 강원, 충북).
 - 공공에서 조성한 사회적경제기금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 공적금융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18.10.5.)에 따라 전북 사회적경제 기금 및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을 지역주도로 조성·구축하고 공공부문이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 및 집중 육성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금융 시스템이 필요함.
- 또한 기금 뿐만 아니라 민간의 사회적경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익률 확보 뿐만 아니라 투자 정보, 즉 사회적 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평가가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그림 1-2]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목표 및 발전전략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방안과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도 사회적금융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여 전라북도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방안 및 운영 주체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경제 기금 조례(안)의 기본 내용을 제시
-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 국내외 사회적금융 현황

○ 사회적금융의 정의 및 범위

- 국내외 사회적금융의 의미 및 구성범위 비교
- 국내 사회적금융의 개념 및 지원 영역 비교(중앙정부 vs. 지자체)
- 전라북도 사회적금융의 범위 설정

○ 해외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사례

- 공공 및 민간 차원에서의 사회적금융 기관 설립 사례
- 기관별 역할 및 기능 비교
-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사회적금융시스템 비교
- 전라북도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방안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의 필요성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인식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금 수요 분석
- 금융 지원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량 및 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자금 조성 방식 대안별 검토

- 대안 1. 기존 운영 중인 기금에서 별도 기금 확보
- 대안 2. 자체 기금 조성 후 중간지원 기관 운영
- 대안 3. 민관 합작 SPV 설립 후 기금 조성

□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방안

○ 기금 운용 주제

-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단계별 공공에서 민관협작으로 전환하는 방안
- 민관협작 운용 방식 검토

○ 사회적경제기금 조례(안)

-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기본 방향
-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주요 내용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 방안

○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 기본 방향

-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성원의 역할
-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 단계별 추진 로드맵

○ 단계별 추진 로드맵에 따른 세부 사업

- 사업별 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사업별 추진 내용 및 방식

2. 연구의 방법

□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 문헌 조사

- 국내외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관련 연구 보고서
- 국내외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례 연구 보고서

○ 자료 수집

-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관련 기관 현황
- 국내외 사회적금융 기관 현황 조사

□ **전문가 자문방법**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대표자 자문
 - 전라북도 내 사회적금융 시스템 구축 필요성,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시 운영 방향 등
- 국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관련 기관 대표자 및 전문가 자문
 -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해결 방안
 - 적정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규모
 -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과정에서 자금 지원 시스템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장

국내외 사회적금융 현황

제1절 사회적금융의 의의와 필요성

제2절 국내 사회적금융 현황

제3절 해외 사회적금융 현황

제4절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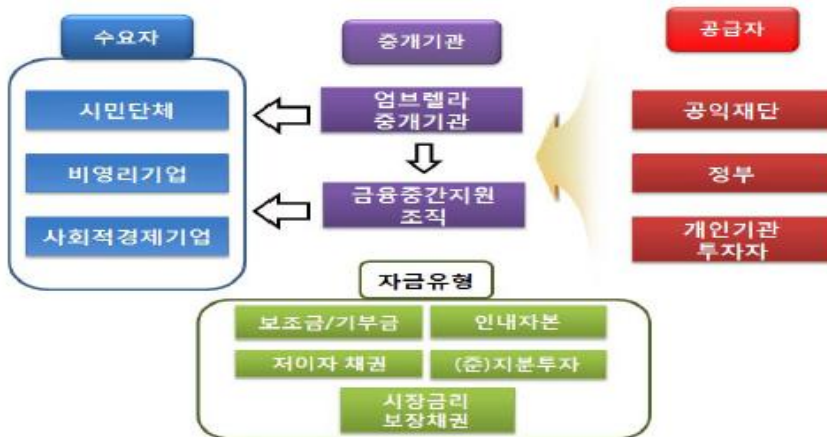
제2장 국내외 사회적금융 현황

제1절 사회적금융의 의의와 필요성

1. 사회적금융의 정의 및 특성

1) 사회적금융의 정의

- 사회적금융은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어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기 어렵지만, 최근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본조달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에 있음.
-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위한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춤.
- 이러한 추세에 맞춰 사회적금융은 금융기관의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금융으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금 수요자에 대한 대출·투자부문을 포괄하는 개념¹⁾으로 이해할 수 있음.



출처 : 박춘섭 외(2016), '충남 사회적금융 체계의 구축과 운영방안', 충남연구원

[그림 2-1] 사회적금융시스템 구조

1)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3)

2) 사회적금융의 특성²⁾

□ 가치지향적

- 사회적금융은 개인과 사회의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함.
 - 기존의 금융 시장에서 양적인 지표를 이용한 수익률과 상환율을 근거한 투자가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함
- 주류 금융시장의 이해관계자를 통해 종종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투자로 실현된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금융의 역할로서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추구하고자 함.

□ 관계지향적

- 사회적 금융은 금융거래를 통해 매개되는 예금자·투자자·대출자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금융거래 관계를 넘어서, 금융을 통해 공동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관계로 규정함.
-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의 중개로 투명한 거래 관계를 통해 이들 간 사회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공동의 가치를 추구함.

□ 임팩트 지향적

- 사회적 금융이 가치 지향적 신용 매개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임팩트 금융이라 볼 수 있음.
 - 임팩트(Impact)란 재무적 수익 외 비재무적인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영향을 포괄하는 말로서 사회적 금융이 경제적 영역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임팩트를 통해 사회 혁신을 지원함을 강조함.

2) 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6), '사회적금융론 교안', 서울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3) 사회적금융의 필요성

- 사회적경제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공동체 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연대금융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등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금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함.
-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되어 왔으나 자본 축적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가운데 정부를 제외한 외부로부터 금융을 조달받기 어려운 상황임
- 기존 사회적경제 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은 농수협 같이 자체적으로 금융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새마을금고와 같이 서민경제 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금융조직이었음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 장기적 투자에 제약을 받게 되어 성장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음.
- 또한 지금까지 사회적금융 관련 정책의 일관성이 낮아 실효성 있는 금융환경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체계화하고 사회적경제 시스템 내에서 각 영역을 지원하는 금융환경을 구축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최근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과 고용 창출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지역 개발 수단으로 사회적금융이 제기되고 있어 지역공동체 재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사회적경제 기반이 이미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 유럽 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산업이 발전해 있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사회적금융 시스템이 새로운 지역 해결 모델로 등장함.

2. 사회적금융 유형

- 사회적금융 형태는 지원 대상 및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마이크로 파이낸스

-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금융에서 소외된 사회 취약계층에게 무담보 신용 대출방식으로 소액의 창업자금을 빌려주고, 교육훈련 등 경영지원 서비스를 통해 자립과 자활을 돕는 금융기법임.
-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3가지 금융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소액대출(Micro credit) : 무담보 신용대출 방식으로 설계
 - 소액저축(Micro-Saving) : 일반 저축계좌와 유사하지만 서비스 이용수수료가 면제되고 최소 잔액요구조건이 없거나 낮은 수준이 유지해도 되도록 설계
 - 소액보험(Micro-Insurance) : 빈곤 계층의 납입 능력을 감안해 적은 보험료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 운영 주체 및 운영 방식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1] 마이크로파이낸스 유형

	조직 규모	주요 자금원	상황보증	의사결정	조직구조	경영
신협	100~200인	구성원 저축	저축	1인 1표	피라미드형 연합체	선출 조합원
마을은행	30~50인	외부대출 구성원 저축	저축 구성원 압력	상향식 구조 NGO협의	마을차원 분권화	선출 회원
마이크로 은행	개별대출	고객저축 기부, 차입 보조금	담보	하향식 구조	집권화 지역 지점	관리직원
집단연대 대출	5~10인	차입 구성원 저축	집단 압력	하향식 구조	피라미드형	관리직원
연계모델	비공식집단		저축 집단압력 NGO 연계	하향식+ 상향식 혼합	마을차원 분권화	관리직원 NGO직원

출처 : 박춘섭 외(2016)

□ 지역개발금융

- 지역개발금융은 일정한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 수단임.
- 또한 지역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이 지역공동체 주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로 볼 수 있으며, 수요자 유형에 따라 구분됨.
 - Business-lending CDFIs :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 지원
 - Civil Society Lending CDFIs : 비영리 자선단체나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에 자금 제공
 - Personal Lending CDFIs : 신용불량자와 같은 개인 대상으로 소액 생활자금을 대출

□ 사회목적투자

- 사회목적투자는 사회문제의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여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임.
- 대표적인 사회목적투자 수단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을 들 수 있음.
 -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함.
- 사회목적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분석,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거치고 보상체계 역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수익을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됨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ment)분석을 통해 기업의 무형적 위험과 기회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특징임.

□ 관계형 협동금융

- 관계형 협동금융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며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위해 십시일반 자본을 모으는 일반적 행위들로부터 시작되어 사회적 금융의 형태 중에서 가장 오래됨.
 -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기반의 관계밀착형 성향이 강함.
- 각 독립적 주체들이 모여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평등한 조건 속에서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연대금융(Solidarity Finance)라고 불림.

3. 사회적금융상품의 유형 분류

□ 금융수단별 분류

- 사회적금융상품은 금융 수단에 따라 보조금(Grant), 인내자본(Patient Capital), 대출(Loan), 위험투자(RiskCapital) 지분(Equity) 등으로 이루어짐.
- 사회적금융의 수요 대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업종, 성장단계, 조직형태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금융수단이 활용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하나의 금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여러 수단들의 배합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형성주체별 분류

- 사회적금융상품을 개발하는 주체에 따라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정책자금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조성하는 사회적기금을 의미하며, 중앙정부 산하 공공금융기관이나 지자체의 금융중개기관의 지원 사업들도 포함함.

- 미소금융 지원사업이나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지원 등의 중앙 정부 중심의 기금사업
-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자금 등을 의미함
- 민간자금은 NGO 등 시민단체 및 민간기업의 지원자금과 사회적경제조직간 상호자조형식으로 형성된 기금 등을 포함함
- 크라우드 펀딩을 비롯해 소셜벤처캐피탈과 같은 벤처펀드
- 사회혁신기금처럼 기업간 자조기금 성격의 자금

□ 지원방식별 분류

- 사회적금융상품의 지원 방식은 보증, 융자, 투자의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음
- 보증은 사회적경제조직이 민간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 신용을 보증해주는 방식임
 -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
- 융자는 저리의 이자로 자본을 융통해주는 금융지원제도임
 -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자금의 융자사업
- 투자는 민간 자본시장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임.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표 2-2] 사회적경제기업 활용 가능 금융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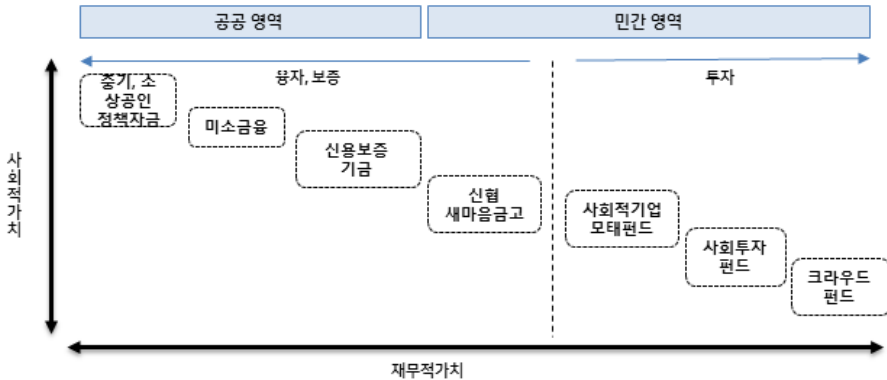
구분		주요 상품	지원 규모	내용	주체
공공	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3억원	운전자금/시설자금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4억원 내	운전자금/시설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5,000억원 (총지원)	운전자금, 시설자금 (사업장 임차금 포함)	기술보증기금
	융자	사회적기업 소액자금 대출	최대 1억원	소액자금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융자사업	5,000만원	보증금, 시설비, 운영자금 대출	신나는 조합
		사회적 가치기업 특별대출	5,000만원	시설자금, 운영자금, R&D 투자	KDB산업은행
		사회공헌기업 보증협약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운전자금, 시설자금	IBK기업은행
		사회적경제조직 전용 경영안전자금	총 100억원	운영자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투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총 290억원	연구개발, 시설투자	한국벤처투자(주)
		IBK 사회공헌기업 보증협약대출		운전자금, 시설자금	IBK기업은행
	복합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오마이컴퍼니, 비플러스)	융자, 투자	자금마련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민간	융자	사회적기업 N정책성 특례기업 우대대출	제한없음	운전자금, 시설자금	KB국민은행
		LG Social Campus 친환경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창업 : 4억미만 성장 : 4억이상	시설비, 사업개발비, 운영비	LG전자, 화학
		사회적기업 연대공제기금	장단기 자금대출	공제가입 기업 대상 신용, 담보대출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한국사회혁신금융 사회혁신기금	30억원	운영자금	한국사회혁신금융
	투자 (펀드)	행복나눔재단 임팩트투자	기업 사회성과 보상	사회성과기반 보상사업 투자	SK행복나눔재단
		임팩트 투자펀드	2200억원	UN SDGs 관련 사업 운영 기업 투자	크레비스 파트너스

출처 : 전지훈(2018) 내용을 일부 수정

제2절 국내 사회적금융 현황

1.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지원 방식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금융 지원 방식은 기업의 목적, 유형, 제도적 형태,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름.



[그림 2-2] 사회적금융 유형별 중점 지원 대상

-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방식은 대부분 공공이 주도하고 있음.
 - 시중은행 및 민간기업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높은 위험 부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공공차원의 사회적금융 지원은 기존에는 보조금 형태의 정책자금 중심이었으나, 점점 사회적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기금을 기반으로 융자 및 신용보증, 투자 등의 사회적금융의 간접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 하지만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은 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서민지원금융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어 사회적경제 특성에 기반한 금융지원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미소금융

- 저소득층, 취약계층 및 빈곤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창출의 기회와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자금조달은 어렵지만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원 하는 사업으로, 복지사업자를 선정하여 대출형태로 지원함.
- 재원은 휴면예금으로 6개 기업(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롯데)과 5개 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이 미소금융재단을 설치함.
- 민간복지사업자(열매나눔재단, 함께일하는재단, 민생경제정책연구소)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에게 간접 지원하고 있음.

[표 2-3] 미소금융 대출조건

사업자명	용도	한도	기간	이자율	상환방법
열매나눔재단	임대차보증금	1억원	5년 (12개월 거치)	연 4.5%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시설운영자금				
민생경제 정책연구소	임대차보증금	1억원	5년 (12개월 거치)	연 3%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시설운영자금				
함께일하는재단	임대차보증금	1억원	5년 (12개월 거치)	연 3%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시설운영자금				
	재무구조개선자금				
신나는조합	임대차보증금	1억원	5년 (12개월 거치)	연 4%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시설운영자금				

□ 중기 정책자금

- 영리형 사회적기업들 뿐 아니라 비영리형 사회적기업들도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용자 신청을 받아 용자대상을 결정한 후 기업의 운전(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직접 대출해주거나, 심사 후 금융회사에서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을 해주는 방식임.

□ 협동조합 기금

- 농협을 포함한 협동조합들은 조합 차원에서의 연대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주로 자신들의 개별 협동조합 내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옴.
 - 농협은 독특하게 금융사업을 경영하도록 법적으로 허용되어 필요자금은 금융계정으로부터 이전하여 사용함.
- 신용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들의 노동자 협동조합이나 주택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협동조합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를 추진한 경우가 없음.
- 기존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 이외에 새로운 분야에서의 금융 관련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는 매우 드뭄.

□ 민간 참여

- 사회적금융의 민간 참여는 기업의 사회적책임투자(CSR)활동이나 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민간 차원에서 사회적기금 조성이나 금융활동의 시도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공공부문에 비해 규모가 작음.
 - SK 등 일부 대기업 중심의 사회적 기업의 투자 및 사회적 가치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의 새로운 금융지원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적경제기업들간 연합을 구성하여 자조적 공제기금을 조성하거나 공공기금을 기반으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민간 참여를 끌어들이는 사회목적투자도 현재 새롭게 주목받는 금융지원방식임.

[표 2-4]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유형

	내용	주체	취급기관
미소금융	취약계층·사회적기업의 자금수요에 대한 저금리·소액신용대출	정책자금	미소금융재단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영리·비영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장기·저금리대출	정책자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	사회적기업 대출에 대해 보증한도 및 조건이 완화된 보증 제공	정책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모태펀드	사회적기업 관련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자본시장을 통한 투자를 유도	정책자금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클라우드 펀딩	웹·SNS 플랫폼을 기반으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 조달	민간자금	오마이컴퍼니, 팝펀딩 등
소셜벤처 캐피탈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로 자금·경영관리 등을 지원	민간자금	crevisse파트너스 등
사회적기업 연대공제기금	사회적기업은 상호부조차원에서 부금을 납부하여 기금 조성, 자금수요시 적립된 재원으로 지원	민간자금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함께일하는재단, 수출입은행 등
사회혁신기금	사회혁신기업들의 출자로 기금 조성 후 자금수요시 대출 제공	민간자금	사회혁신기금추진단 등

출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자금조달길라잡이(2015)

□ 민간 은행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 국내 민간 은행의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은 총 2,986건, 3,424억원으로 '17년(2,527억원) 대비 897억원(35.5%) 증가함.
- 기업유형별로 보면,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이 2,987억원(87.2%)으로 가장 많으며, 협동조합(278억원, 8.1%), 마을기업(138억원, 4.0%), 자활기업(21억원, 0.6%) 순임.
- 지원유형별로 보면, 대출이 3,355억원(98.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품구매 40억원(1.2%), 기부후원 18억원(0.5%), 출자 6억원(0.2%) 순임.

[표 2-5] 국내 민간 은행의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지원 실적

구분	2017년(A)			2018년(B)			증감(B/A)	
	건수	금액 (억원)	비중 (%)	건수	금액 (억원)	비중 (%)	금액 (억원)	증감률 (%)
사회적기업	1,808	2,008	(79.5)	2,499	2,987	(87.2)	979	48.8
협동조합	168	329	(13.0)	185	278	(8.1)	△51	△15.5
마을기업	161	156	(6.2)	188	138	(4.0)	△18	△11.5
자활기업	167	34	(1.3)	114	21	(0.6)	△13	△38.2
소계	2,304	2,527	(100.0)	2,986	3,424	(100.0)	897	35.5

출처 : 금융위원회(2019), '2019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보도자료'

[표 2-6] 국내 민간 은행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유형별 실적

구분	2017년 (A)			2018년 (B)			증감 (B/A)	
	건수	금액 (억원)	비중 (%)	건수	금액 (억원)	비중 (%)	금액 (억원)	증감률 (%)
대출	1,184	2,452	(97.0)	1,795	3,355	(98.0)	903	36.8
출자	-	-	(0.0)	3	6	(0.2)	6	-
기부·후원	86	44	(1.7)	86	18	(0.5)	△26	△59.1
제품구매	1,029	29	(1.1)	1,096	40	(1.2)	11	37.9
기타	5	2	(0.1)	6	7	(0.2)	5	250.0
소계	2,304	2,527	(100.0)	2,986	3,424	(100.0)	897	35.5

출처 : 금융위원회(2019), '2019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보도자료'

2.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 다양한 수단으로 자금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크지 않음,
- 이에 대한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경제 분야 지원에 따른 리스크가 아직까지 높다는 인식과 함께 기대수익률을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기대수익률을 높여야 함.
-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인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평가와 지원 이후 자금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경영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또한 기대수익률이 각기 다른 자금공급자들의 자금을 모아 다양한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채택하여 자금의 공급 가능성을 높여야 함.
-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사회적금융 시스템 내에서 거래비용을 줄이고 직접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라고 볼 수 있음.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은 자금제공 방식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있음.
 - 소매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 사회적경제 조직에 자금을 직접 제공
 - 도매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 소매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에 자금을 제공하고 이들 소매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역할 수행

□ 도매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9년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도매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으로 설립되었고,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는 서울시가 사회투자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금융에서 도매기능 뿐만 아니라 소매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
 - 서울시는 예산으로 500억원을 조성하여 한국사회투자라고 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을 맡기면서 민간부문으로부터 500억원을 매칭 방식으로 조달하여 총 1000억원의 규모로 기금을 운영함.

- 한국사회투자자는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기금으로 사회적기업 용자· 소셜하우징 용자· 중간지원기관협력사업 용자· 사회적프로젝트 용자 등의 사업을 수행함.
-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 중 가장 많은 자금을 가장 낮은 이자로 공급함.
- 소매형 사회적금융 전문기관 및 자조형 금융의 활성화에 필요한 마중물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함.

(재)한국사회투자 개요

□ 설립 목적

- (재)한국사회투자자는 서울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으로 직접금융지원과 함께 간접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출처 :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홈페이지(www.social-investment.kr)

[그림 2-3] (재)한국사회투자 사업 영역

□ 주요 기능

○ 임팩트 금융 전략 컨설팅

- 복지를 넘어 사회투자 접근방식으로 재원의 선순환을 통해 사회와 환경의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재원을 유통하는 금융 전략 개발

○ CSR 전략 컨설팅

- 기업 및 정부/지자체 등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 정책을 금융기반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 개발
-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사회공헌의 성과를 관리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홍보/마케팅할 수 있도록 SCR 브랜딩까지 One-Stop 수행

○ 사회적부동산 개발

-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부동산 개발이 아닌 도시재생, 사회통합 등 사회적인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을 진행
- 청년 및 노년빈곤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입주인 맞춤형 임대운영관리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
- 상가/오피스 개발사업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영세상공인들을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수행

○ 혁신기금 운용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국내외 사회적경제 조직에 자금을 투/융자하는 투자기금으로 사회적가치와 상환가능성을 동시에 평가하여 투/융자 대상을 선정

○ 연구/평가

- 사회적 가치 평가 및 임팩트 신용평가 수행
- 자금수요 조사
- 사회적경제/임팩트사업 분야 국제개발사업 연구 및 평가

□ 소매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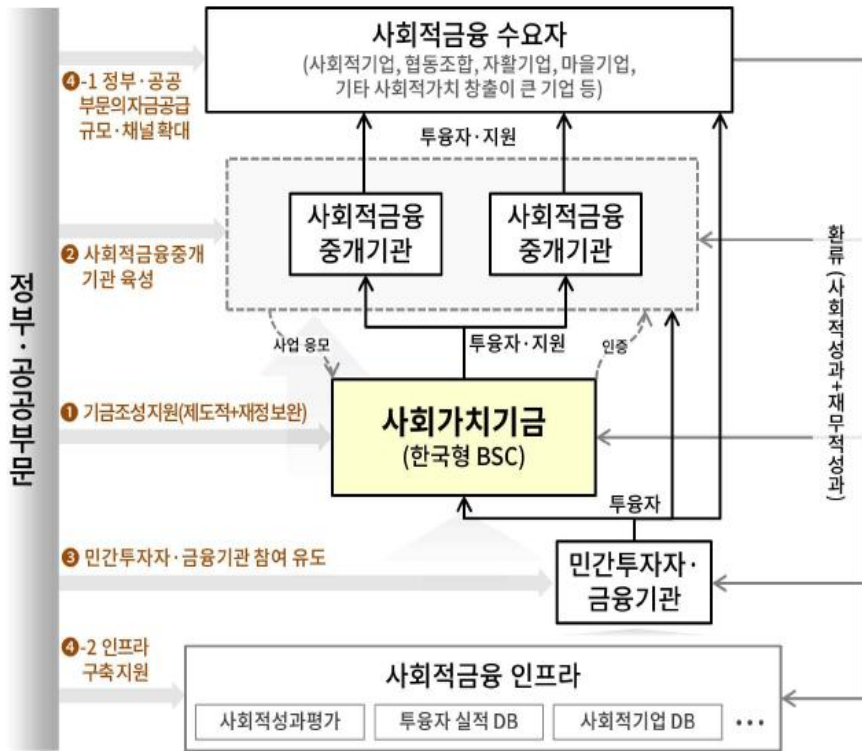
- 소매형 사회적금융기관들은 아직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최근에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동작신협 및 북서울신협 등 서울시내 3개의 신협에서 자신들의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업무를 시작함.
- Sopoong, HGI, D3Jubille 등 약 10여 개의 임팩트투자기관이 180억원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성공한 벤처기업 전임임원이나 일부 대기업으로부터 자선 자금을 제공하여 조성함.
 - 단순한 대출보다는 지분투자,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등을 선호함.
 - 다양한 투자 수단을 결합하여 기대수익률이 상이한 다양한 자금공급자들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있음
- SK가 출연한 행복나눔재단은 2016년부터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자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자선 투자자임
 - 2017년까지 총 130개 사회적기업에 총 147억원을 보조금을 지원함
- 사회적경제기업 투자에 초점을 맞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관들로는 오마이컴퍼니와 와디즈 등이 있음.
 - 오마이컴퍼니는 2012년 5월에 홈페이지를 공식오픈한 이후, 2017년 5월까지 782여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함.
- 주로 기부금이나 기탁금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의 중간지원조직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마이크로크레딧업무를 주로 해오던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조합이 대표적임.
 - 이들은 주로 대기업의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소액 보조 및 융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최근에 설립한 한국사회혁신금융은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협동기금, 가톨릭사회경제연합발전기금, 대구시사회적경제혁신기금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중간지원조직형 사회적금융기관은 자금을 직접 조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임.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소매형 사회적금융중개기관으로 화성시와 서울 성북구가 대표적임.

3.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정책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음.
 - 2017년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발표에 이어 2018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사회적 금융에 대한 정부정책방안을 제시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사회적금융 도매자금 공급기관인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의 설립 지원을 통한 정부 및 공공 부문의 사회적자금 공급 채널 확대
 - 금융 수혜자와 공급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전문성 있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을 통해 사회적금융 접근성 제고
 - 다양한 금융기관, 민간투자자 참여유인을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회적금융 자금 규모 확대



출처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2018)

[그림 2-4] 중앙정부의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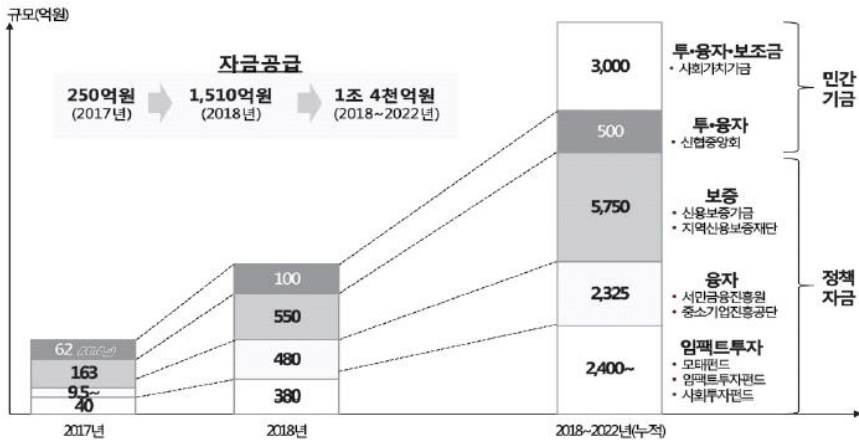
○ 책방향에 따른 사회적 금융지원의 구체적 정책과제는 같음

- 사회적금융의 시장과 생태계 조성

- 사회적금융 도매기금(wholesaler)인 사회가치기금의 설립과 이를 위한 「서민 금융법」개정 등의 제도화 추진
- 사회적금융 운영과 생태계 조성 역할 수행 위한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인증제도 마련 시행
- 기업들의 및 시중은행 참여유인을 위한 세제 등 지원을 통한 민간자금 유입의 기반을 마련하여 초기단계에 정부자금 유입에서 단계별 민간자금 유입을 고려

- 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규모 확대

- 휴면예금 활용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기금과 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의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펀드 조성 및 운영을 통한 투자사업 확대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유사한 사회적경제 금융기관의 참여확대를 위한 법인 출자 허용 등 제도개선



출처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2018)

[그림 2-5] 사회적금융 자금 확대 계획

2) 관련 제도

□ 협동조합 지원 금융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융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임.
- 기존 협동조합 관련 8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협동조합 중에서 농협, 수협, 임협 등은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계정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옴.
- 이들 기관들은 자체금융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임

-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사업에 대한 투자자금이 크게 소요되지 않아서 금융에 대한 필요성이 높지 않았음.
 - 이들 사업 구조가 단체수의계약 등을 위한 활동에 중심이었기 때문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주로 조합원으로부터의 출자금과 차입금 및 내부 유보금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해 옴.
-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등은 내부로부터의 자금 조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자금이 조달될 필요가 있지만 이이들을 위한 융자 혹은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금융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임.
- 신탁 및 새마을금고가 협동조합지원금융을 수행하도록 기대를 받고 있지만 신탁법 상으로는 외부 법인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담보가 부족한 법인에 대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
 -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기본법 상 협동조합에 대하여 출자금의 1/2범위 내에서 3천만원까지 특례보증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과 공동으로 업체당 1억원 한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 현재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에는 사회적금융을 법적 개념으로 격상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음
-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및 일부 정당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일부 내용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 법 통과가 힘든 상황임.
- 반대 논리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사회적경제 기금과 관련된 부분임
 - 기재부는 기금의 재원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출연하는 기금을 법안에 담는 것에 난색을 표함

-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회적경제 기금의 성격이 ‘퍼주기’ 성 예산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음
- 유승민 의원 안은 ‘사회적금융’에 대한 법적 정의를 하지 않았으며, 사회적금융과 관련된 내용도 최소한으로 담고 있음
 -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조성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음
- 윤호중 의원 안은 ‘사회적금융’에 대한 법적 정의를 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기금을 중앙과 지방이 별도로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사회적금융’을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 정의함
 - 또한 지역 내에서 민간 차원의 사회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공제기금, 공동체 기금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조성운영하는 민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법률 제정이 가능하도록 함
- 2019년에 발의한 강병원 의원 안 역시 ‘사회적금융’에 대한 법적 정의를 하고 있으며,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금융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지원 및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도입을 지원함
 -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제도 정비 및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함
 - 지방에서 조성한 기금을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이 금융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4. 타 지역 사례

□ 서울시 : 서울시사회투자기금(시+민간 기부를 통한 기금 조성)

- 서울시는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가치실현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및 활동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사회적기금을 조성함.
 - 총 55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서울시가 526억원, 민간 기부가 31억원으로 구성됨
- 공적 기금 중 가장 많은 자금 지원 및 낮은 금리로 운용되고 있음.
- 2014년부터 3년간 한국사회투자에 위탁 운영을 하였으나,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인해 2017년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
- 3년간 70개 기업대상으로 347억원 융자 지원을 하였으며, 사회주택, 공유자동차기업 쏘카(SOCAR), 한국택시협동조합 등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성장에 필요한 재원공급에 기여함.
-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음
 - 규모가 큰 기업대상 위주 지원(1기업당 4.9억원)으로 영세·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
 - 이자율, 상환기관 등 비신축성, 보수적 운용이 이루어졌음.
 - 융자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등 투자기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
 - 의사결정기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협소하여 기금 효율이 저하됨.

□ 성북구 : 사회투자기금(구 금고 지정을 통한 기금 조성)

-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및 운영자금 등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함.
- 2016년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20년까지 30억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융자 지원하는 사업과 투자사업지원 등으로 구성됨.

- 성북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체결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보완하고 있음.
- 우리은행(관리시스템), 성북구 새마을금고협의회 등(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사)신나는조합(융자심사 및 사후관리)

□ 충청북도 : 민간기금(사회적경제조직들의 자조기금 사례)

- 충북사회적경제기금은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법인 단체, 개인 등의 출연금으로 구성된 순수민간기금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기반조성 구축을 목적으로 조성됨.
- 2003년 사회적기업이 3,000만원 씨앗기금을 출연하면서 조성되었고 현재 10여개의 조직이 기금을 출연하는 등 규모가 확장되고 있음.
- 기부나 모금행위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기금조성사업과 사회적경제 조직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생산설비 등의 기금배분사업이 핵심임.
- 이외 사회적경제 주체발굴 및 창업지원 등 육성사업과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및 프로젝트 지원, 그리고 공제조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협동경제 기반마련 지원사업을 주로 수행.
-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 모금계획 수립과 효율적 운영관리 및 심의 배분 등을 결정함.
- 기금출연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조임.
- 기금의 공공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출연액을 불문하고 동등한 의결권 행사 등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기금 필요성과 내용을 중시하는 실주의 원칙과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진정성 제고의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기금의 전체규모는 1억원도 안되는 작은 규모지만 주로 소액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관계금융기반의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운영체제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임.

- 민간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부금만으로 운영을 지속하고자 함.
 - 지역 공공자금의 유입이 사회적경제기업간 관계와 네트워크를 잠식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충북의 사회적기금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과 사람들의 신뢰에 근거한 지역기반 관계금융을 명확하게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민간 사회적기금 형성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이러한 운영 결과로 충북협동조합연합회의 출연 등 규모를 확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00% 융자 상환율을 보이고 있음.

□ 지자체 차원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현황

-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가 2015년 이후 주춤해지고 있음.
- 이는 2015년 행안부에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개정의 영향이 큼.
 - 지방기금법 제6조의 민간위탁 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 수입·지출 및 자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민간위탁이 불가능하게 됨.
 - 개정된 법에 따라 행안부는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변경 고지하였고 이후 사회적경제 기금을 행정이 직접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이로 인해 민관 모두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에 적극성을 잃게 됨.

[표 2-7] 지방기금법 민간위탁 관련 조항 개정 전후 대조표

개정 이전	개정 이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u>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u>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u>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표 2-8] 광역 지자체 단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추진 현황

지역	현황	유형
서울	지자체, 사회투자기금 출연/운용 - '12년 조례 제정, 841억원 규모 기금 조성(시 578억, 민간 263억) - '12~'16년 (재)한국사회투자 위탁, '17년부터 직영(재용자, 출자)	지자체 기금 출연 ('12년~)
부산	지역 공기업, 사회적경제 지원기금(BEF) 조성 - '19년 18억원 조성 - 부산항만공사 등 8개 공기업 참여, '18년부터 5년간 50억 조성 계획 -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협력, 융자지원 사업(2% 이차보전)	지역기업 공동기금 ('18년~) 이차보전
대구	사회적경제 대구혁신기금 조성(클라우드펀딩 연계) - 대구시, 신용보증기금 협력 특례보증 지원(0.2% 지원) - 지자체 차원 기금 조성 추진(한국사회혁신금융 컨설팅 중)	당사자조직 기금 ('16년~) 지자체 보증료 지원
인천	지역 공기업, 인천사회적경제활성화 공동기금(I-SEIF) 조성 - 인천항만공사 등 3개 공기업 참여, - '18년부터 5년간 15억 조성 계획 - (사)사회연대은행이 조성 협력 및 운용	지역기업 공동기금 ('18년)
광주	'13년 제정된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에 기금 조성 근거 마련 - 기금 출연 없이 '17년말 기금 존속기한 종료	지자체 기금 조성 시도(실패)
대전	대전시, 하나은행 협력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이차보전) - 지자체 이차보전 3%, 은행 자체 이자 감면 0.8%	지자체 이차보전
울산	울산신용보증재단,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역신보 특례보증
세종	세종시, 사회투자기금 출연/운용 - '18년 조례 제정 - '19년 10억 운용 중, '21년까지 총 30억원 규모 조성 예정	지자체 기금 출연 ('18년~)
경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이차보전을 통한 융자지원 - '16년 조례 제정, '19년 현재 120억원 규모 기금 조성 및 운용 - 신탁중합회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최대 2% 이차보전	지자체 기금 출연 ('16년~)
강원	강원랜드희망재단, 4개 시군 사회적경제 융자지원 시작('19년) - '14년 제정된 사회적경제 조례에 기금 관련 조항을 두어 21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17년 기금 폐지	지역기업 융자지원 ('19년~) 지자체 기금 폐지
충북	당사자조직이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13년~), 1억원 규모 - 충북 사회적경제조직, 충북시민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여 조성 - 대출사업 진행	당사자조직 기금 ('13년~)
충남	충남도, 하나은행 협력,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2% 이차보전) - 5년간 100억원 규모의 지자체 기금 추진 예정	지자체 이차보전 ※지자체기금 추진
전남	전북신용보증재단,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역신보 특례보증
경북	경북도, 신용보증 협력 특례보증 지원(0/2% 지원)	지자체 보증료 지원
경남	지자체 기금 추진 중 - 지방정부 기금 조성 관련 조례 발의	※지자체기금 추진
제주	-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에 선정되어 3억원 규모 자금으로 도내 기업 대상 융자 실시('19년~)	중앙기금 활용 융자 ('19년~)

출처 : 장지연(2019)

5. 유사 금융 제도 사례(농업금융)³⁾

- 현재의 사회적금융 시스템은 아직 기초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과거 정책 금융으로서 시작한 농업금융의 발전 단계를 통해 향후 발전 방향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임.

□ 1950년대

- 1950년대 농업 분야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농지개혁으로 인한 지주 금융 붕괴로 증가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농업금융은 고비용-저수익 구조로 민간 금융기관의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이러한 농업금융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는 농업금융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었고 농업금융을 전담할 금융기관을 설치함
 - 1956년에 주식회사 농업은행이 설립되었고 1958년에 특수은행 농업은행으로 재탄생함
 - 농업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정부로부터의 대하금(貸下金) 등으로 자금 조달 능력을 확보하여 중장기자금을 취급함.

□ 1960년대

- 1961년 농업은행은 농업협동조합과 통합하여 종합농협으로 거듭남.
- 농협의 자금조달 능력 향상으로 농업 분야의 정책금융 규모가 크게 늘어남.
 - 이차보전제 및 국외 차관 도입을 통해 정책 금융 비중을 늘림
- 1969년 조합원의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융자해주는 구조의 상호금융이 시범사업을 실시함.

3) 조승현(2018)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 1970년대

- 1973년 상호금융이 전국 단위 조합에서 시행되고 1976년에 전 단위조합에서 취급하기 시작함.
- 상호금융이 크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농업금융 시스템은 정부 제공 정책금융, 농협중앙회의 은행금융과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으로 구성됨
- 도시화에 따른 농촌 노동력 감소에 대응한 농업 기계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자금 조달원으로 기금 및 차관을 활용하기 시작함.

□ 1980년대

- 농업기계화 등의 사업 추진에 따른 농가 부채 증가와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증가하여 농업금융에서 사금융이 확대되기 시작함.
- 농가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금융 부채를 상호금융과 정책자금으로 대체하는 등의 농어촌종합대책을 실시함
 - 농가 채무를 제도금융과 정책금융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1972년에 도입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활용됨

□ 1990년대

-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기초를 내세워 농업의 규모화, 전문화 등이 농업 부문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됨.
- 농업 부문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는 농업 부문 재정투융자를 확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짐.
- 하지만, 재정투융자 확대는 농가 부채 문제를 다시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금융을 정책금융으로 대체하여 농어가 부담경감 조치를 시행함.

□ 2000년대

- 농업구조개선사업이 성과 대신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9년 농업종합자금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도입됨.
- 농업종합자금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 투자가 감소하고 농업 정책금융 또한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함.

□ 2010년대

- 2010년 농식품모태펀드가 조성되어 담보 없이 농업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됨.
 - 일반 금융시장에서 기업은 자금 조달이 용이했지만, 농업 부문은 자기 자금과 금융 자금만이 재원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투자를 통한 성장 확보를 마련하게 됨.
- 1972년 조성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1990년대 구조개선사업으로 그 역할이 증대되었으나, 이후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함
 - 농업부문 경영의 상대적 불투명성에도 불구하고 부분보증비율이 중소기업과 동일한 85%이므로 금융기관이 농신보를 취급한 유인이 부족함.
 - 위탁관리기관인 농협이 농신보 운영에 소극적이며 관리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제3절 해외 사회적금융 현황

1. 해외 사회적금융 유형 분류

- 사회적 금융운영의 해외 사례는 정부에서 조성한 기금을 통한 사회적 금융을 운영하거나 협동조합 및 주식회사로 설립된 은행의 사회적 활동을 기반으로 주로 수행되고 있음

[표 2-9] 해외 사회적금융 목적별 사례

목적	기관	형태	주요 내용
사회적 배제 완화	그라민 프로젝트(방글라데시)	마이크로크레딧	취약계층 빈곤 탈출
	밴시티(캐나다)	신용협동조합	금융 배제자 창업 지원
	빅소사시어티 캐피털(영국)	정부 기금	금융배제자 금융 접근 지원
	어큐먼 펀드(미국)	사회적벤처 캐피탈	취약계층 금융 접근 지원
	SOS사회혁신센터 CDI(프랑스)	사회적기업집단 내부금융	취약계층 복지와 고용 배제 완화
사회적 목적 구현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아일랜드)	아일랜드 융자기금 활동	예술가 지원과 지역문화창출
	GLS 은행(독일)	협동조합 은행	환경, 생태계 보전 금융 지원
	트리오도스 은행(네덜란드)	주식회사 은행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활동 지원
	JAK 협동조합 은행(스웨덴)	협동조합 은행	무이자 금융환경 창출 지원
	뉴 리소스 은행(미국)	주식회사 은행	환경적 가치 창출 지원
	쇼어 은행(미국)	주식회사 은행	쇠퇴 도심지역 활성화 지원
	CDFI 펀드(미국)	정부 기금	낙후지역 활성화 지원
	소셜 임팩트 본드(SIB) (영국)	사회혁신성과채권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지원
사회적 가치 추구	방카에티카(이탈리아)	협동조합 은행	지방자치와 분권활동 지원
	라보랄 쿠차(스페인)	기업내부 신용협동조합	기업 자금창출 및 근로자 일자리 창출 지원
	레가코프 연대기금(이탈리아)	협동조합 연대기금	조합의 노동 가치와 권리 수호
	소코덴(프랑스)	노동자 연대기금	노동 가치와 권리 수호
	상티에 신타(캐나다 퀘벡)	사회적경제 연대 신타기금	사회적 배제 극복과 지역사회 가치 활동 지원

출처 : 전지훈(2018)

- 이러한 사회적금융 활동의 목적은 공통적으로 3가지로 구분됨
 -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대표되는 주민 및 기업들의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소액 금융의 지원
 - 환경보전, 낙후지역 활성화, 사회문제의 해결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금융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기금을 활용하거나 은행의 사회적 목적활동이 중심
 - 노동조합 및 기업간 연대활동을 중심으로 노동의 가치 및 협동과 상호부조의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금융 활동으로 연대기금 및 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원

2. 정부 재정 중심의 지원 체계

- 정부의 재정 혹은 기금 중심으로 금융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미국과 영국을 들 수 있음.
- 미국은 1995년부터 연방정부 재정을 중심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을 통해 간접 지원하고 있음.
 - 클린턴 정부가 개정한 지역 재투자법(CRA)을 기반으로 은행을 통한 기금을 조성하였고 이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을 위해 간접지원함.
 - CDFI Fund는 지역에서 인증받은 지역개발은행, 신용협동조합, 벤처캐피탈 등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들을 통해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낙후된 지역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공동체금융의 대표적인 사례임.
 - CDFI Fund 운영의 핵심은 지역개발금융기관 역량강화에 있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CDFI를 통해 재원을 공급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도매기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영국은 2012년부터 휴면예금과 대형은행 출연금을 통해 Big Society Capital을 조성하였으며, 사회적금융 중개기관(SIFI)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투융자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을 보조금 방식에서 사회적 투자로 전환하면서 시중은행의 휴면예금을 통한 기금조성으로 다양한 종류의 사회투자를 수행하는 투자전문금융중개기관(SIFI)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도매기금 형태로 운영됨.

- SIFI는 사회적 투자상품을 개발하고 보증 등을 통해 타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투자 조건으로 사회적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음.
- 프랑스는 2012년에 프랑스 중소기업 지원기관(Oseo), 기업지원을 위한 예금공탁금고(CDC Entreprises), 프랑스국부펀드(FSI) 등 기존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설립하여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영세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음
- 프랑스 공공투자은행 설립으로 인해 ① 사회적기업들이 이용가능한 자금 확보, ② 지역 및 국가 경제 체제에서 사회적 혁신 지원, ③ 임팩트 투자 시장 확대, ④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한 인식 제고의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됨
- 일본은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비영리재단을 통해 사회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에 있음.

3. 민간 기반 지원 체계

□ 협동조합 금융 방식

- 협동조합이 발달한 캐나다, 스페인 등에서는 신용협동조합(협동조합은행), 협동조합 연대기금 중심으로 사회적금융시스템이 구축됨.
- 캐나다에서는 데잘랭그룹이 1971년에 연대경제금고(Caisse d'économie solidaire)를 설립하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금융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스페인에서는 1959년부터 몬드라곤 협동조합그룹의 라보랄쿠차(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신협)가 조합간 자금 재분배 및 사업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함.

□ 사회적금융거래소 · 크라우드펀딩 방식

- 투자자(기부자)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프로젝트 등을 중개하는 크라우드펀딩 방식과 유사한 사회적금융거래소를 설립하여 사회적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 있음.
- 브라질, 싱가포르 등에서 이 유형에 포함됨

[표 2-10] 전통금융거래소와 사회적금융거래소 비교

구분	추구 목표	투자대상	투자자	상품 유형	평가 체계
전통적 거래소	재무적 가치 (투자 수익)	일반 기업	일반/전문 투자자	영리기업의 주식, 채권	재무적 가치
사회적 거래소	재무적 가치 &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업 또는 프로젝트	사회적 투자자	사회적 기업의 주식, 채권	재무적 가치 및 사회적 가치

[표 2-11] 사회적금융거래소 유형

구 분	주요 내용	사례
기부금 거래소	- 사회투자 프로젝트를 심사하여 상장대상 프로젝트 선별 - 기부자는 거래소에 상장된 프로젝트 중 수혜 대상 기업을 선택	브라질 상파울로 거래소
채무주식거래소	- 거래소가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넷 플랫폼 지원 - 원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채무관계 형식	미국(KIVA)
지분주식 거래소	- 사회적 기업 등이 발행한 지분 증권 거래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공모 형식	싱가포르(IIX)
규제형 거래소	- 사회적 기업들의 상장에 적합한 증권거래소 - 사회적 금융 공급주체들에게 해당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 투자의 적격 대상임을 공신력 있게 보증	영국(SSX)
조성형 거래소	- 투자자들을 상대적으로 소액 대출과 지분투자를 필요로 하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들과 연결시켜주는 거래소 -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취향에 부합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에 소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미국 (Mission Markets) 캐나다 (Toronto Social Venture Exchange)

출처 : 이기송(2013), '사회적 금융의 나아갈 길', KB금융지주 웹진

□ 사회적은행 방식

-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는 예금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적기업 등에 투융자하는 사회적은행이 등장함.

- 네덜란드에서는 트리odos은행(Triodos Bank)은 은행업 인가를 받아 저리로 조달한 예금으로 사회적기업, 환경기업에 대출 등 지원을 함.
- 이탈리아에서는 방카에티카(Banca Popolare Ethica)는 엄격한 윤리성을 갖춘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경제를 대상으로 신용을 제공함,

4. 퀘벡의 연대기금⁴⁾

- 캐나다 퀘벡은 스페인 모드라곤, 이탈리아 볼로냐와 함께 세계 사회적경제 3대 모델로 꼽히는 지역으로 지방에서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벤치마킹 주요 대상 지역임
- 퀘벡에는 3,3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사회적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2만 5천명이며 연간 17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어 이는 퀘벡 GRDP의 약 8%를 차지하는 규모임
- 퀘벡은 1980년대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정 감소와 실업률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함
- 퀘벡의 사회적금융 시스템 성공요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는 점으로 주 정부가 협동조합들과 시민단체들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함
 - 주정부는 협동조합과 NGO 대상의 지원을 위해 벤처 캐피탈 등 협동조합을 개발하였고 NGO 지원조직 구성원을 전문가 중심의 공무원으로 구성함.
 - 협동조합들은 퀘벡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하여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대협동조합을 육성함
 - 시민단체들은 상티에를 중심으로 육아, 노인돌봄, 환경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함

4)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3차례 실시하였는데, 전라북도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퀘벡을 참고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퀘벡의 사회적금융 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함

- 두 번째 성공요인은 다양한 중간지원기관들이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였다는 점임
 - 주정부는 1998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인 지역개발센터(CLD)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등 창업컨설팅을 지원함
 - 협동조합은 1985년 지역개발협동조합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지역협동조합 개발기구를 통해 사회서비스 중심의 연대협동조합 창업을 지원함
 - 상티에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퀘벡 내 사회적경제 발전 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와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함.
- 세 번째 성공요인은 비영리 금융체계를 정부와 협동조합, 시민단체 진영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했다는 점임
 - 주정부는 퀘벡투자공사로부터 협동조합개발 중간지원기관 지원을 위한 자금을 조성함
 - 협동조합들은 일반협동조합에서 조성한 발전기금으로 신생 협동조합을 지원함
 - 시민단체들은 상티에를 중심으로 퀘벡사회투자네트워크와 상티에 신탁을 통해 저리의 사업 초기자금 및 후기 사업 확장 자금들을 지원함
 - 그 밖에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지역 내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운영 및 사업 자금을 지원함
- 위와 같은 성공요인으로 퀘벡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초기 사업 개발, 시드머니 조성, 규모화를 위한 사업 확대 등 단계에 맞춰 장기적으로 저금리의 자본형 자금조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음
- 협동조합기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연대기금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음
- 그 중 하나로 1983년 설립된 퀘벡노동자연대기금로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노동자 연대기금으로 성장함
 - 퀘벡노동자연대기금은 2016년 기준 약 122억 불의 자산을 통해 2,636개의 기업에 76억불을 투자하여 187,414개의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시키는 성과를 얻음

[표 2-12] 캐나다 퀘벡주 기금 유형

유형	명칭	특징
협동조합 기금	데자르맹신용 조합운동	- 퀘벡주 첫 신용조합 - 데자르맹 신용조합 퀘벡 지역 연합 창설(1932년) - 퀘벡 및 온타리오 주 313개 신용조합(2016년) - 2,584억불 자산
	연대신용조합	- 퀘벡의 노동자 신용조합 - 8억 3,100만불 자산 - 협동조합기업에 5억 1,300만불 투자(공공지원주택 포함)
	데자르맹 지역과 협동조합 자본	- 2001년 설립 - 사회경제적 목표를 가진 하이브리드 기금 - 18억불의 자산으로 퀘벡주의 417개 회사와 협동조합, 펀드사의 성장 지원
	중소기업 성장 자본 기금	- 퀘벡 주의 중소기업 사업에 대해 500만불 이내 투자 - 2010년 이후 총 1억 9,100만불을 184개 중소기업에 투자
노동자 기금	퀘벡노동자 연대기금	- 2016년 기준 122억불의 자산 - 2,636개 기업에 76억불을 투자하여 187,414개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전국노동조합 연맹기금	- 2016년 기준 15억불 규모의 자산 - 365개의 중소기업에 10억불 투자하여 32,103개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지역사회 기반기금	모트리올 지역사회 대출협회	-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인구를 대상으로 대출 - 1990년 설립 이후 374건의 360만불의 대출 - 483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1,373개의 일자리 유지
	퀘벡 지역사회 금융 네트워크	- 2000년 이후 1,500만불의 투자 진행 - 9,582개의 일자리와 4,987개의 기업 창출 및 유지
정부 기금	퀘벡투자금융	-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공공기금 - 협동조합기업체를 위한 자금조달과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투자 진행
	사회적경제 개발기금	- 사회적경제기업과 단체에게 5천~5만불의 보조금 지원
하이브리드 기금	공동체미래발전 프로그램	- 빈곤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 기존 프로그램을 합쳐 발전기금 조성
	퀘벡사회투자 네트워크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진흥 목적 - 퀘벡 주정부를 포함한 지역은행과 사회활동가 등 다양한 부문의 조합으로 구성
	피두시 상티에 사회적경제 신탁	- 사회적경제에서 5만불~150만불 사이의 15년 후 상환 대출이라 는 새로운 투자 상품을 만들
	지역사회주택 보수기금	- 주택협동조합과 주택비영리기관들이 집세를 올리지 o넣고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노동자 기금 참여 형태 중 파트너십 형태
	INNOGEC 기금	- RISQ의 기술지원 프로그램 혹은 퀘벡 비즈니스 전수센터의 사 업승계프로그램의 승계프로그램
	PUSH 기금	- 몬트리올 콘코디아 대학생 대상 주거 프로젝트 개발 목적
민간 기금	몬트리올 투자기금	- 협동조합 및 비영리 주택을 위한 부동산 구매와 보수 목적

출처 : Marguerite Mendell(2017)

제4절 시사점

□ 국내 사회적금융의 정책적 한계를 탈피

-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 시스템은 문제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 단계에 있으나, 아직 제도적 기반이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과도기 단계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들도 성장기의 발전단계에 진입한 단계이지만 자금수요에 비해 금융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 상품 개발이 필요함.
-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과 같은 인증제도를 통한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제한적인 성장 효과만 가져온다는 한계와 보조금 형식에 대한 문제제기로 금융지원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공을 비롯한 시중은행 및 민간기업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다양한 금융제공 방법의 변화가 필요함.
- 자금 융자 회수의 리스크 관리로 인해 물적 담보 및 영업실적, 융자기간 등에 대한 일반 기업 수준으로 금융 지원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큰 부담이 됨.
- 사회적경제 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이윤창출 보다 사회적 가치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융자 및 보증, 투자 대상 선정 기준 방향 전환이 요구됨.
- 인내자본과 같은 장기상품을 비롯한 사회적 성과나 활동을 평가로 반영하는 융자 시스템, 사회적 활동에 대한 다양한 투자 상품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접근이 필요함.
- 사회적금융의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를 비롯한 시스템과 생태계 구축이 수도권에 치우쳐져 있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사회적 금융지원을 접근하고 있도록 사회적금융 제도 체계화가 필요

- 도매기금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금융 유형과 목적에 부합된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이들 도매기금을 받아 운용하는 지역단위 소매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육성이 필요함
- 또한 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한 지역 내 제도권 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시스템으로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함

□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금융 활동 참여 필요

- 사회적금융을 운용하는 주체가 다양화되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육성 지원이 필요함.
 - 영국 빅소사이어티 캐피탈이나 미국CDFI Fund 사례처럼 정부의 기금을 각 지역과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시중은행, 벤처캐피탈, 투자회사 등을 비롯한 다양한 중개기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인재 육성 및 조직화의 육성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민간은행들의 사회적금융 참여와 신탁 및 새마을금고의 적극적 역할 부여가 필요함.
 - 트리오도스 은행, GLS은행처럼 고유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은행들의 사회적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시중은행들의 사회적 기능 확장이 필요함.
 - 데자르맹과 같은 사회적 금융에 적극적인 신용협동조합들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사회적 목적실현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함.
- 정부의 도매기금 조성 과 이에 대한 민간 전문기관에 의한 활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 현재 국내 사회적금융에서 공공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CDFI나 빅소사이어티캐피탈처럼 공공에 의한 도매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및 민간수요중심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들을 육성 발굴이 필요함.

- 정부와 은행권 뿐만 아니라 기존의 협동조합과 NGO 등 각각의 진영에서 사회적금융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캐나다 퀘벡의 경위럼 주정부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시민단체들이 각자의 금융 지원 체계를 형성하고 이들간의 연계 혹은 결합 상품을 통해 자금 지원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우리나라의 지역 차원에서도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관들도 독자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유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자체 차원의 공공재원 확보 필요

- 다양한 사회적기업 성장에 필요한 투·융자와 사회적 프로젝트 지원을 담당할 지자체 차원의 투자펀드 재원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
-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할 수 없으므로 지역의 인프라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중간지원기관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함.
- 사회적기업 대상의 금융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혁신 촉진과 지속가능한 성장벨트를 구축해야 함.
-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단계, 즉 예비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성을 확보해야 함.
- 지역 내에서 공공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프로젝트나 개발사업에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및 제3섹터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
- 소셜 벤처 창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벤처자산과 멘토링 역량 결함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 엔진을 마련해야 함.
- 민간산학의 다양한 금융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소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 개인과 법인이 자유롭게 기부하고 투자할 수 있는 민관협력의 비영리 지역공인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지원해야 함.
- 사회공헌기금, 기부금, 후원금, 엔젤투자금, 사회적기업의 사업 수익 등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함.
- 민간기업과 지역 금융기관 등 민관산학의 금융 인프라를 소셜벤처인으로 연계하여 금융, 경영, 마케팅 등 자원 개발을 촉진해야 함.

□ 다양한 사회적경제 중개기관의 육성 필요

- 아직까지 사회적금융 시스템에서 정부와 대기업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자금이 조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중개기관과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일반 투자자, 기업 및 재단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사회적금융기관 설립이 현재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지역기반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는 수도권에 치우쳐져 있음.
 - 지역 내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구성원의 자조기금 조성 노력도 미흡한 상황임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기금이나 투자은행 등이 사회적금융에 아직까지 관심이 없는 상황으로 이들의 사회적금융 진입을 위해서는 소매형 사회적경제 중개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민투자자를 발굴하고 사회적 투자를 통해 윤리적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형별, 성장단계별 지원 수단 다각화 필요

- 우리나라 사회적금융의 지원 방식은 주로 소액 보조금이나 단기 융자금 중심이고 장기 대출이나 지분투자, 후순위 대출 등은 비중이 낮은 상황임

-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 금융 수단이 다양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공급 여력은 많지만, 실제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금 규모는 많지 않다고 평가받는 것임.
-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 지원 대상이 주로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시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사회적경제 성장에는 한계를 보일 수 있음.

□ 수요 기반형 사회적금융 시스템 구축 필요

- 사회적금융 시스템은 공급자 중심의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금융시스템과는 달리 사회적경제 수요 기반의 접근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금융 지원 수단 개발이 필요함.
-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공 및 사회 영역에서의 서비스 수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한 금융 수요 분석이 요구됨.
 - 특히 자본시장 체계에서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복지, 환경서비스 영역에서의 사회적경제 조직 수요 분석을 통해 이들을 위한 금융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들 지원을 위한 자격 요건 분석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이 필요함.
- 캐나다 퀘벡의 사례와 같이 지역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회활동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 협동조합 및 기업이 협력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기금 조성과의 사회적금융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법의 경직성으로 인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힘든 상황으로 미국의 CDFI Fund 등과 같은 높은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나 촉매자본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3

장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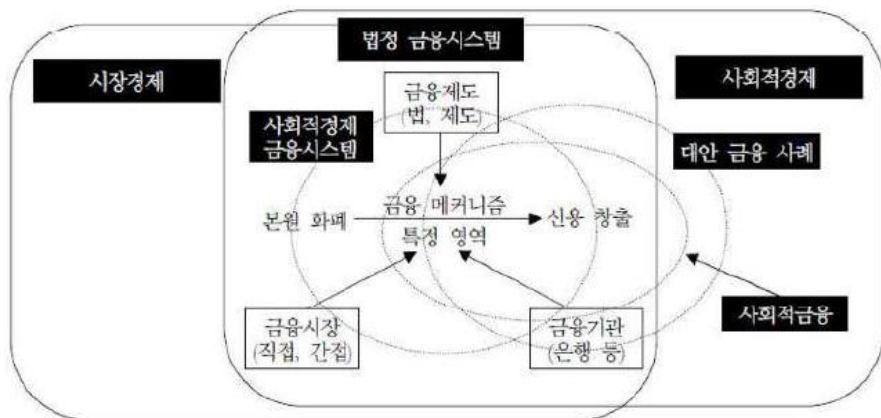
-
- 제1절 전라북도 사회적금융의 정의와 범위
 - 제2절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 체계 진단
 - 제3절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발전 방향

제3장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현황

제1절 전라북도 사회적금융의 정의와 범위

1. 사회적금융의 일반적인 정의

- 사회적금융의 광의의 의미는 사회적경제활동에 자본을 투융자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통칭하는 반면, 좁은 의미로는 사회적경제 조직 및 영역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체계임
- 사회적경제활동은 지역개발, 지역금융, 지역화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 및 민간 은행에서 ESG 개념을 도입한 사회책임투자 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사회적금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출처 : 이인우(2016)

[그림 3-1]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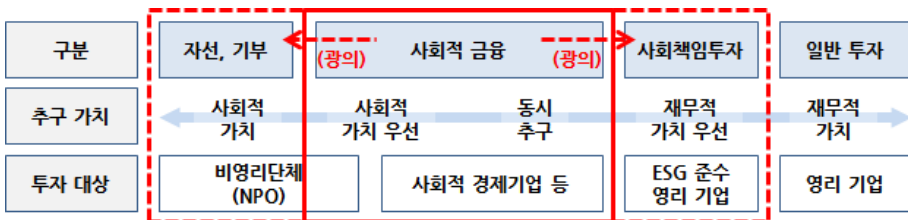
-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금융은 좁은 의미에서 접근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2월 8일에 발표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금융 은 거시적으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실현을 재무적 이익과 함께 추구

하는 금융이며,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 융자, 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이라 정의함

- 내부 검토 과정에서 사회적 금융의 개념 범위를 투자, 융자, 보증 뿐만 아니라 보조금(Grant)이나 자선행위(Philanthropy) 등까지 확장하여 보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금융 생태계가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서 정부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투자, 융자,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자 함
- 타 지자체에서의 사회적금융 관련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 대부분 단기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생태계가 성숙되는 단계에서 넓은 의미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주로 제시하는 정책 방안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 사회적 금융 중 개기관 설립 혹은 육성, CSR을 활용한 사회투자자금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

2. 전라북도 사회적금융의 정책적 범위

- 지역의 사회적금융 생태계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사회적금융의 정책적 범위를 넓게 잡아 정책 수립을 할 수 있을 것임.
- 즉, 민간 기업의 사회적책임투자나 개인 및 비영리단체의 사회활동 등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해야 할 것임.



[그림 3-2] 사회적금융의 범위

- 하지만, 전라북도는 사회적경제 규모가 큰 편이지만, 사회적금융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자체의 기반이 취약하고 아직까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미징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넓은 의미의 사회적금융을 정

책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음.

- 궁극적으로 넓은 의미의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단기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지역 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환경 구축으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금융의 정책적 범위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제2절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 체계 진단

1. 전라북도 금융산업 현황⁵⁾

- 금융산업은 해당 지역의 실물경제와 직간접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유사하게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라북도는 실물경제 규모에 비례하는 금융산업 성장을 보이지 못함.
- 1985년 약 3.9조원이던 전북의 GRDP는 2016년 47조원까지 성장하였지만,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금융산업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전북 금융은 간접금융 위주로 형성되어 왔고 간접증권 판매를 위한 소매업무에 국한되어 있어 지역 내 자본시장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표 3-1] 전라북도 금융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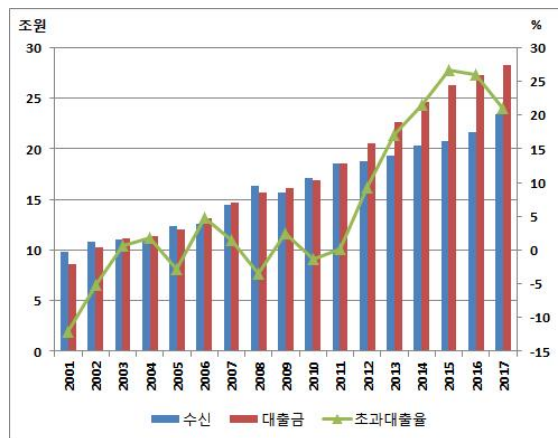
기 관 명	연 도	전 북						전국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6
합 계		1,263	1,250	1,180	1,173	1,171	1,141	-
예금은행		220	216	206	206	205	195	7,136
	일반은행	152	147	139	139	138	129	5,160
	시중은행	69	69	67	67	67	60	4,144
	지방은행	83	78	72	72	71	69	967
	특수은행	68	69	67	67	67	66	1,976
비은행예금금융기관		1,043	1,034	974	967	966	946	-
	수 출 입 은 행	1	1	1	1	1	1	14
	자 산 운 용 회 사	279	276	253	254	255	240	N.A.
	신 탁 회 사	269	267	246	242	239	234	N.A.
	상 호 저 축 은 행	14	12	11	10	11	11	324
	신 용 협 동 조 합	74	74	72	72	72	72	1,657
	상 호 금 융	112	111	111	110	110	110	5,241
	새 마 을 금 고	65	64	60	60	60	60	3,195
	우 체 국	229	229	220	218	218	218	2,621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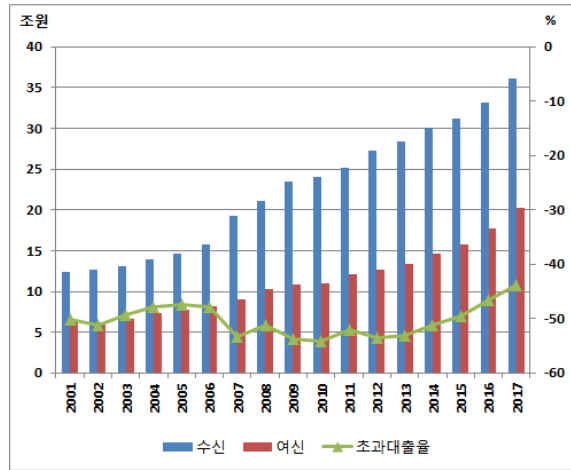
5) 정희준, 강영대(2019)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 지역에서 자금운용이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은 은행 및 비은행 예대기관들임
 - 2016년 말 기준, 전북의 금융기관들 중에서 예금은행의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예금은행의 예대금액이 차지하는 비중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비은행예금기관 숫자 비중은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이 2% 내외이고 나머지 기관들은 3%를 넘는 등 전북의 실물경제 비중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지 않음.
- 전북 금융산업은 금융권 간에도 구조적 불균형성을 보이고 있음.
- 예금은행의 경우 2010년대 들어와 초과대출율이 증가해 2017년 기준 예금은행의 초과대출율은 21%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역내 조달자금의 약 21% 가량이 역내에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함.
- 비예금은행 금융기관의 초과대출율의 경우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44% 수준에 달하고 있음.
 - 이는 비예금은행 금융기관들에 의해 역내에서 조달된 자금 중 15.9조원이 부분 역외로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 3-3] 전북 예금은행 여수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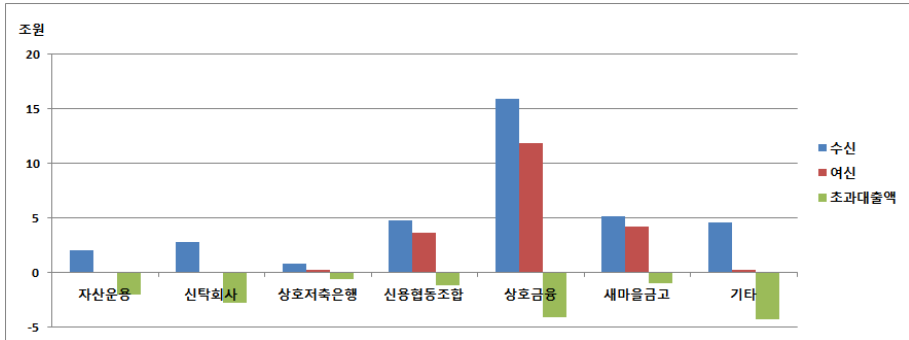


[그림 3-4] 전금 비예금은행 여수신 추이



- 비예금은행의 자금유출이 심한 기관은 상호금융과 우체국으로 이 중 상호금융의 자금유출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
 - 지역의 소매금융이 중심이 되는 상호금융이 높은 자금유출을 보이는 것은 전북지역의 낮은 경제력과 생산성을 반영하는 것임.
- 상호저축은행,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다른 금융기관들 역시 모두 자금유출이 일어나고 있음.
 - 2010년대 초반 신용위기를 겪었던 상호저축은행의 초과대출율은 -72.4%에 달하고 있다.
- 간접금융 중심의 전북 금융구조는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자금 및 기금을 운용 및 투자를 위한 인프라가 거의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줌.
- 또한 기존에 있는 금융중개기관들의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사회적금융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금융기관들과 금융중개기관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림 3-5] 비예금은행 금융기관별 자금 초과대출액



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자금 조달 현황

□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 금융 현황

- 공공 중심의 정책지원금 평균 규모가 가장 큰 유형은 마을기업이며, 출자금 대비 비율이 283%로 공공 정책 지원 의존율이 높음
- 은행권 중심의 차입금 평균 규모가 가장 큰 유형은 사회적기업으로 출자금 대비 비율이 235%로 높음
- 사회적기업은 은행권으로부터의 차입, 마을기업은 공공 정책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자활기업은 양쪽 다 지원을 많이 받으며, 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외부 금융 지원 비율이 낮음

[표 3-2]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 자금 조달 현황

	출자금(만원)	정책지원금(만원)		차입금(만원)	
		금액	출자금 대비 비율	금액	출자금 대비 비율
사회적기업	10,833.7	10,800.5	99.69%	25,478.0	235.17%
마을기업	4,056.0	11,469.3	282.77%	3,685.0	90.85%
자활기업	1,233.6	1,387.7	112.49%	4,968.0	402.72%
협동조합	17,992.8	5,386.4	29.94%	5,386.0	29.93%

□ 운영기간별 금융 현황

- 공공의 정책지원금 측면에서는 4~6년 사이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자금 대비 비율 역시 높음
- 은행권의 차입금 규모는 6년 이상인 기업에서의 규모가 가장 큼
- 설립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책지원금보다 은행권의 차입금 비율이 높아짐

[표 3-3]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기간별 자금 조달 현황

	출자금(만원)	정책지원금(만원)		차입금(만원)	
		금액	출자금 대비 비율	금액	출자금 대비 비율
3년 이내	12,170.5	3,353.7	27.56%	11,205.2	92.07%
6년 이내	6,058.8	12,135.4	200.29%	18,229.1	300.87%
6년 이상	13,622.7	10,622.3	77.97%	21,660.3	159.00%
전체	11,210.4	9,042.4	80.66%	18,189.6	162.26%

□ 종사자 규모별

- 사회적경제 기업의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차입금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10~20명 사이 규모의 기업에서의 정책지원금 규모가 높아지고 있음

[표 3-4]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 규모별 자금 조달 현황

	출자금(만원)	정책지원금(만원)		차입금(만원)	
		금액	출자금 대비 비율	금액	출자금 대비 비율
10명 이내	9,501.1	5,153.9	54.25%	7,662.2	80.65%
20명 이내	15,280.5	17,221.2	112.70%	33,001.0	215.97%
50명 이내	16,005.9	13,363.7	83.49%	52,927.3	330.67%
50명 이상	1,038.6	10,265.0	988.35%	7,375.0	710.09%

3.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인식 현황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라북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403군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⁶⁾.
- 설문조사 내용을 금융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전반적인 역량 수준과 중요도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조사 항목은 크게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10점 만점 리커드 척도법을 사용하여 수준을 측정함.
 - 첫 번째 항목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준비 과정에 대한 역량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10개의 지표를 사용함.
 - 두 번째 항목은 사회적 공동체 형성 과정에 역량으로 15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함.
 - 세 번째 항목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비즈니스 역량과 관련한 내용으로 15개 지표를 기준으로 조사함.
 - 네 번째 항목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15개 지표를 기준으로 조사함
 - 마지막 항목은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18개로 구성됨.
 - 각 항목들 중 금융 지원과 관련된 지표는 준비과정 항목에서 자금조성과 외부지원, 비즈니스 항목에서는 자금조달과 재무안정성, 지원체계 항목에서는 보조금, 민간자금과 특화항목으로 구성됨.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각 요소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파악하였으며, 이 중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비교 검토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각 지표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하게 판단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IPA 분석을 사용함.

6)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한 「전북사회적경제기본계획」의 전북사회적경제실태인식조사 결과를 활용함.

- 기존의 IPA 분석 중요도비율이 응답자의 주관에 따라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도와 만족도 속성간의 비대칭적비선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적 방법으로 도출된 간접 중요도를 사용한 수정 IPA 분석을 사용함.
- 수정 IPA 분석 방식 중에서 Vavra(1997)의 수정 IPA 분석과 Deng(2007)의 수정 IPA 분석을 사용함.

□ Vavra(1997)의 수정 IPA 분석 결과

- Vavra(1997)의 수정 IPA 분석 방법은 내재적 중요도와 명시적 중요도에 따라 요인들의 분포를 표현할 수 있음
- 1사분면과 3사분면은 실행요인으로서 충족수준(명시적 중요도)이 실제 고객 만족(내재적 중요도)과 비례하는 영역임.
- 2사분면은 매력요인으로서 명시적으로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하였지만, 만족도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내재적인 중요도가 높은 영역임.
- 4사분면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인들로서 설문 대상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갖추어야할 속성이라고 인식하는 영역임.

[표 3-5] 수정 IP Matrix(I) 구조

		명시적 중요도	
		낮음	높음
내재적 중요도	높음	2사분면 매력 요인 (Excitement factor)	1사분면 실행 요인 (Performance factor)
	낮음	3사분면 실행 요인(비중요) (Performance factor)	4사분면 기본 요인 (Basic factor)

- 분석 결과를 보면, 금융 지원과 관련된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내재적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준비과정에서의 외부 지원, 비즈니스 역량 차원에서의 자금조달능력과 재무 안정성, 지원체계에서의 보조금 지원이 명시적으로는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

하였지만, 내재적으로는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에 반해 준비과정에서의 자금조성, 지원체계에서의 민간자금과 특화금융은 명시적 중요도와 내재적 중요도 모두 낮게 평가되고 있어, 사회적경제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실행요인이기는 하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표 3-6] 수정 IP Matrix(I)에 따른 전북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평가

매력 요인	실행 요인
[준비과정] 목적인식, 역량준비 [공동체성] 지역사회기여, 지역경제기여, 주민교류협력 [비즈니스] 인력양성, 인증제도, 품질관리, 공동사업기반, 연대조직 [지원체계] 상품사회가치, 사회적경제협력, 지역사회협력, 내부성과환원, 역량강화, 매출성화, 영업성과, 생산성	[준비과정] 논의회의, 교육컨설팅, 사업계획, 시장조사 [공동체성] 협력소통, 동질성, 운영참여, 의사결정, 운영규칙, 권익성과 [비즈니스] 정보획득, 개방참여, 경영전문성, 홍보마케팅, 상품화역량 [지원체계] 행정기관, 판매지원, 구매지원, 지원조례, 우호적인식 [사업성과] 운영혁신, 상품혁신
실행 요인(비중요)	기본 요인
[준비과정] 준비과정, 자금조성 [공동체성] 조직연대교류, 취약계층참여 [비즈니스] 공동사업 [지원체계] 민간자금 , 주민교육, 특화금융 [사업성과] 성과관리, 내부사회가치, 외부성과환원, 의사결정, 임금수준, 고용성과, 결과혁신	[준비과정] 이익구조, 외부지원 [공동체성] 리더십, 역량강화, 회계투명성, 전담인력 [비즈니스] 판로안정, 공적판로, 거래안전성, 수익분배, 설비기반, 공간확보, 자금조달 , 재무안정성 , 전담인력 [지원체계] 중간조직, 보조금 [사업성과] 사회적가치

- 즉,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조직들 사이에서 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내재적으로 중요성이 다른 요인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지원 체계 중에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중요도를 높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있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항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Deng(2007)의 수정 IPA 분석 결과

- Deng(2007)의 수정 IPA 분석 방법은 내재적 중요도와 명시적 만족도에 따라 요인의 분포를 표현할 수 있음.
- 1사분면은 명시적 만족도와 내재적 중요도가 모두 높은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할 필요가 있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음.
- 2사분면은 내재적 중요도가 높지만 명시적 만족도가 떨어지는 영역으로 정책적으로 우선 개선되어야 할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음.
- 3사분면은 명시적 만족도와 내재적 중요도가 모두 낮은 영역으로 약점 항목으로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음.
- 4사분면은 명시적 만족도가 높지만, 내재적 중요도가 낮은 영역으로 정책 우선 순위에서 떨어지며 현상 유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음

[표 3-7] 수정 IP Matrix(II) 구조

		명시적 만족도	
		낮음	높음
내재적 중요도	높음	2사분면 중점투자 영역 (Concntrate)	1사분면 유지강화 영역 (Keep up the good work)
	낮음	3사분면 점진적 개선 영역 (Low Priority)	4사분면 현상유지 영역 (Possible Overkill)

- 분석 결과를 보면, 금융 지원과 관련된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명시적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준비과정에서의 외부 지원은 유지강화 영역에 속해 있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적 역량 중에서 강점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지속 유지가 필요한 항목임.
- 준비과정에서의 자금조성, 비즈니스 역량 차원에서의 자금조달, 지원체계에서의 민간자금은 내재적으로 중요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명시적 만족도가 낮아 중점투자 영역에 속함.

- 비즈니스 역량 차원에서의 재무안정성, 지원체계에서의 보조금과 특화금융은 명시적 만족도가 떨어지지만, 내재적 중요도 역시 낮아 약점 요인으로 꼽히지만 정책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음.

[표 3-8] 수정 IP Matrix(I)에 따른 전북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평가

중점투자 영역	유지강화 영역
[준비과정] 자금조성 [공동체성] [비즈니스] 공적판로, 정보획득, 자금조달, 전담인력, 공동사업 [지원체계] 행정기관, 민간자금, 주민교육, 인증제도, 지원조례, 우호적인식 [사업성과] 성과관리, 사회적경제협력, 내부성과환원, 역량강화	[준비과정] 준비기간, 논의회의, 교육컨설팅, 목적인식, 사업계획, 이익구조, 시장조사, 역량준비, 외부지원 [공동체성] 리더십, 주민교류협력, 조직연대교류, 운영규칙, 취약계층 참여, 회계투명성, 전담인력, 권익성과 [비즈니스] 개방참여, 경영전문성 [지원체계] [사업성과] 사회적가치
점진적 개선 영역	현상유지 영역
[준비과정] [공동체성] [비즈니스] 판로안정, 홍보마케팅, 재무안정성 [지원체계] 중간조직, 보조금, 인력양성, 품질관리, 판매지원, 구매지원, 공동사업기반, 특화금융, 연대조직 [사업성과] 지역사회협력, 외부성과환원, 고용성과, 매출성과, 영업성과, 생산성	[준비과정] [공동체성] 협력소통, 동질성, 운영참여, 의사결정, 역량강화, 지역사회기여, 지역경제기여, 회계투명성 [비즈니스] 거래안전성, 수익분배, 상품화역량, 설비기반, 공간확보 [지원체계] [사업성과] 내부사회가치, 상품사회가치, 의사결정, 임금수준, 운영혁신, 상품혁신, 결과혁신

- 즉, 금융 지원과 관련된 조직 역량 강화 측면에서 대부분 현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우선 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함.
- 특히 민간자금의 경우, 내재적 중요도에 비해 명시적 만족도가 떨어져 민간 자금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 분석 결과

- 수정 IPA 분석을 통해 전북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생각하는 금융지원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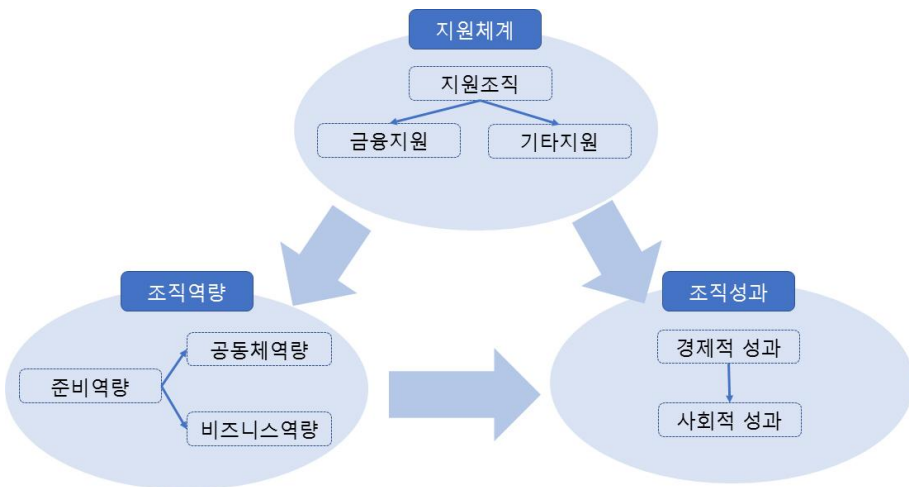
은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들에 비해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거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항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하지만, 만족도와 연계하여 볼 경우, 실제 금융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중요도와 비교하였을 때, 정책 우선 순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4. 금융 지원이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경제조직 요인간 구조 모형

- 사회적경제 시스템에서 지원체계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간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그림 3-6] 사회적경제조직 요인간 구조

- 지원체계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 크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음
- 각각의 역량 내에 내포하고 있는 하위 단위의 역량들이 존재하며, 하위 단위의 역량들 간에도 영향관계가 존재함.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체계는 지원조직의 역량, 금융지원 역량, 금융을 제외한 기타 지원역량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지원조직의 역량이 금융지원 역량과 기타 지원역량에 영향을 줌.
-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은 준비역량, 공동체역량, 비즈니스역량으로 구성되며, 준비역량은 공동체역량과 비즈니스역량에 영향을 줌.
-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적 성과는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줌.
- 이와 같은 구조 모형에서 요인들 간의 관계를 통계적인 구조방정식을 통해 파악함.

□ 구조방정식 추정 결과

- 구조방정식 추정은 2가지 구조로 구분하여 진행함.
- 첫 번째 구조방정식은 지원체계 내에 있는 지원조직, 금융지원, 기타지원 역량을 하나로 묶어 지원체계 역량이라고 보고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
-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제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공동체역량과 비즈니스 역량 그리고 지원체계 역량임
 - 3개의 요인 중에서 경제성과에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비즈니스 역량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제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자체적인 비즈니스 역량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뜻함
- 사회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용인은 공동체역량과 경제성과, 지원체계역량인 것으로 나타남.
 - 역량 요인 중에서 사회성과에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제성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과가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비즈니스역량의 경우 사회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즈니스역량 개선을 통한 경제성과 향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원체계 역량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준비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화된 준비역량은 공동체역량과 비즈니스역량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하지만 지역의 지원체계 역량이 공동체 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크기는 작음.

[표 3-9] 구조방정식 추정 결과(외생변수를 지원체계로 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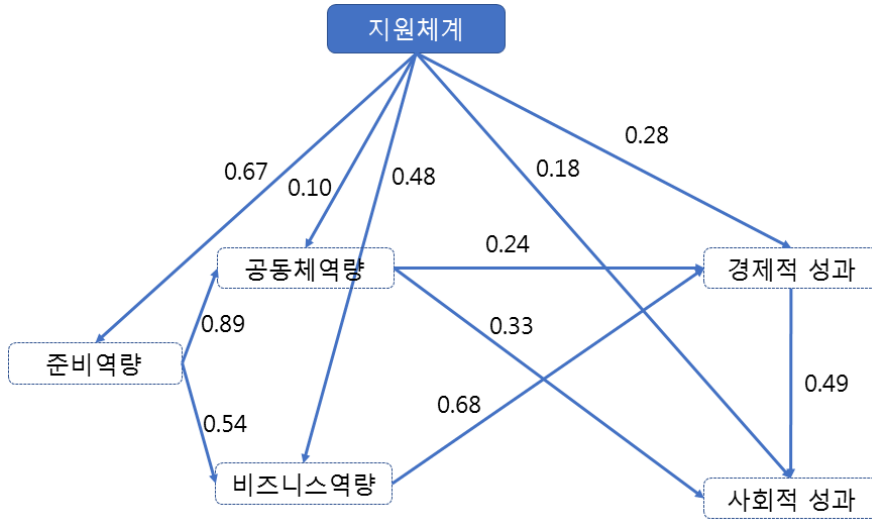
		추정계수	표준 오차	Z값
준비역량	←			
	지원체계	0.67115***	0.06103	11.00
공동체역량	←			
	준비역량	0.29932***	0.06468	13.90
	지원체계	0.09932 **	0.03852	2.58
비즈니스역량	←			
	준비역량	0.54481***	0.04980	10.94
	지원체계	0.48107***	0.04645	10.36
경제성과	←			
	준비역량	-0.17941 *	0.10025	-1.79
	공동체역량	0.23688***	0.09100	2.60
	비즈니스역량	0.68199***	0.09333	7.31
	지원체계	0.27877***	0.06201	4.50
사회성과	←			
	준비역량	0.01227***	0.06495	0.85
	공동체역량	0.33406***	0.06199	5.39
	비즈니스역량	-0.03122***	0.06562	-0.48
	경제성과	0.49464***	0.05137	9.63
	지원체계	0.18302***	0.04167	4.39

*** : 유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 유의수준 5%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 유의수준 10%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요인별 영향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3-7]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요인간 관계도

○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과 지역 내 지원체계 역량이 직간접적으로 경제성과와 사회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10] 요인별 성과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외생변수를 지원체제로 둔 경우)

	준비역량	공동체역량	비즈니스역량	지원체계	경제성과
경제성과	0.40517	0.23688	0.68199	0.90231	-
사회성과	0.49610	0.45123	0.30612	0.84595	0.49464

○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모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준 요인은 지원체계 역량으로 지원체계가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비율보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성과 향상 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 즉, 전라북도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체계 역량이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를 통한 성과 향상에도 큰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음.

○ 지원체계 중에서 금융 지원 역량 만을 따로 분리하였을 경우⁷⁾, 요인간 영향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풀어 본 결과와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11] 구조방정식 추정 결과(외생변수를 금융지원으로 둔 경우)

	추정계수	표준 오차	Z값
준비역량 ← 금융지원	0.55280***	0.05928	9.32
공동체역량 ← 준비역량	0.88164***	0.06173	14.28
← 금융지원	0.12657***	0.03549	3.57
비즈니스역량 ← 준비역량	0.60716***	0.05299	11.46
← 금융지원	0.40468***	0.04501	8.99
경제성과 ← 준비역량	-0.12491***	0.10109	-1.24
← 공동체역량	0.17321 *	.0.09250	1.87
← 비즈니스역량	0.72989***	0.09310	7.84
← 금융지원	0.27177***	.0.05831	3.73
사회성과 ← 준비역량	0.04400***	0.06676	0.66
← 공동체역량	0.31867***	0.06353	5.02
← 비즈니스역량	0.02375***	0.06700	0.35
← 경제성과	0.51444***	.0.05255	9.79
← 금융지원	0.08482 **	0.03922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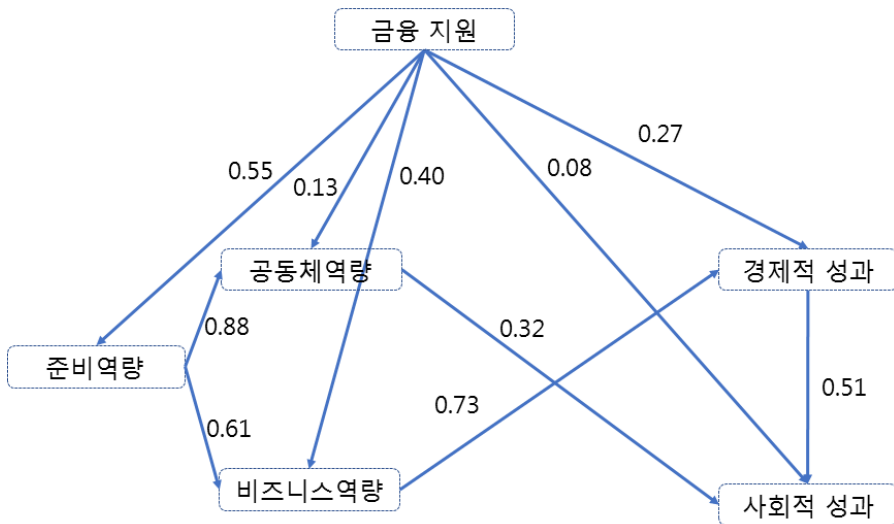
*** : 유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 유의수준 5%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 유의수준 10%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경제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비즈니스 역량 그리고 지원체계 역량임

- 2개의 요인 중에서 경제성과에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비즈니스 역량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제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자체적인 비즈니스 역량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뜻함

7) 당초 지원체계 역량을 지원조직역량, 금융지원역량, 기타지원역량으로 구분하여 이들 요인 모두를 포함한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풀어보려 하였으나, 해를 도출하지 못한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금융지원역량만을 대상으로 관계 모형을 추정함

- 또한 앞선 분석결과와 다르게 공동체 역량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 지원이 사회적경제조직의 공동체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을 알 수 있음
- 사회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용인은 공동체역량과 경제성과, 지원체계역량인 것으로 나타남.
- 역량 요인 중에서 사회성과에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제성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과가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비즈니스역량의 경우 사회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즈니스역량 개선을 통한 경제성과 향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앞서 분석결과와의 차이점은 금융지원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요인별 영향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3-8] 금융지원과 사회적경제 요인간 관계도

-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과 지역 내 금융지원 역량이 직간접적으로 경제성과와 사회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12] 요인별 성과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외생변수를 금융지원으로 둔 경우)

	준비역량	공동체역량	비즈니스역량	금융지원	경제성과
경제성과	0.47096	0.17321	0.72989	0.79537	-
사회성과	0.58166	0.40778	0.39924	0.73155	0.51444

-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모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준 요인은 금융지원 역량으로 금융지원이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비율보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성과 향상 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 다만 경제성과 측면에서 금융지원으로 인한 직간접효과와 비즈니스역량 강화에 다른 직간접효과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경제성과를 위한 지원 정책이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역시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제3절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발전 방향

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 지역 내 금융산업의 취약함

- 전라북도 금융산업의 주요 특징은 직접금융보다 간접금융에 더 치우쳐져 있으며,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 및 비은행 예대기관들임
- 하지만 이들 금융기관들의 초과대출율이 심하고 자금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금 및 기금을 운용 및 투자를 위한 인프라가 거의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로 인해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의 한 축이 되는 민간 금융기관들의 사회적금융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듦
- 다만, 전북은행이나 신한 등의 경우, 중앙 정부 정책에 맞춰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기관들을 전북 사회적금융의 플레이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지역기반 은행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다진 후에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금융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역량과 관련한 요인들의 만족도와 중요도간의 IPA 분석을 통해 각 요인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우선 순위를 파악할 수 있었음
- 그 결과, 전북도내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사회적 금융수단 중에서 공공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항목으로 판단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전반적으로 금융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다른 요인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특화금융과 민간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는 전라북도 내 사회적금융에 특화된 금융 수단 및 민간 지원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금융 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 중심의 보조금 뿐만 아니라 투융자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지원받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급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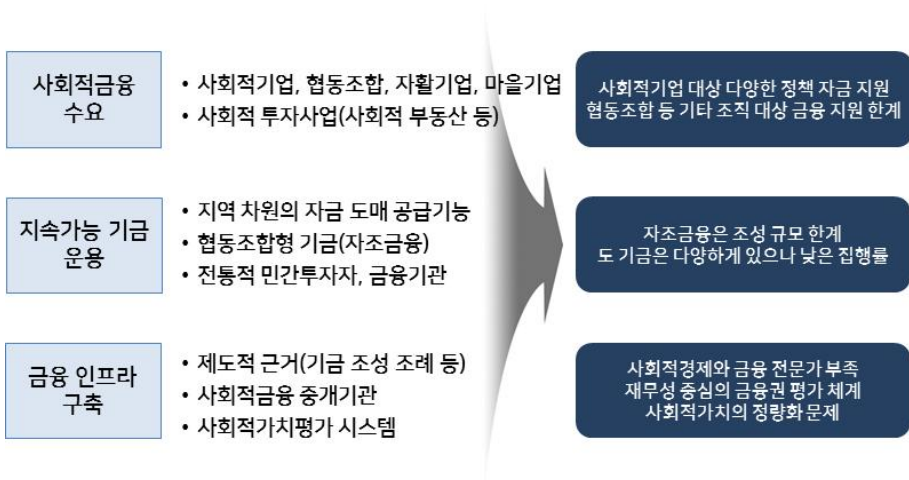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의 요인별 관계를 분석할 결과, 도내 지원체계 역량, 특히 금융지원 역량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에 직간접으로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
- 즉, 사회적금융생태계 활성화 정책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다만, 사회적경제조직 스스로 금융지원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보고 있지만,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의 역량 강화 및 성과 개선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큼

□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한 사회적가치 평가 체계 필요

-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이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 지원 혹은 기타 지원을 통해 역량 향상 정도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적가치 평가 체계 구축 시,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역량 강화 정도까지 고려하여 평가 지표간 가중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차원의 도매 성격의 기금 확보 필요

- 앞서 파악한 바와 같이 지역 기반의 민간 금융 기관들은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대출 및 용자를 해 줄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공공 차원의 도매 기금을 조성하여 이들이 소매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도매 성격의 기금은 현 시점에서 민관 합작으로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가 주도하여 기금 조성에 대한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그림 3-9]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생태계 진단

2.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향

□ 기본 방향

- 전라북도의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할 것임.
- 첫 번째는 지역 내 사회적금융 수요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북 내 사회적경제조직들은 공공의 보조금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시작 단계에 있는 조직들에 집중되어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별로 복지 분야나 혁신형의 경우처럼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힘든 유형이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고정된 수익이 보장되는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금융 지원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수익 창출이 거의 힘들 것으로 보이는 복지형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인내자본 투입이 적적할 것이며, 당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미래에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형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분투자 등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표 3-13]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지원 방식

	복지형	위탁형	지속가능형	상업형	혁신형
지원수단	보조금, 채권 인내자본	보조금, 대출	대출, 채권 인내자본	위험자본 지분투자	위험자본 지분투자

-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단계별로도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창업 초기에는 보조금 형식의 지원에서 성장할수록 직접 투자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형성하여 수요를 확대해야 함.

[표 3-14]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방식

	인큐베이팅	시장진입	규모확대	성숙
지원수단	보조금	위험자본 지분투자	대출, 채권	지분투자

-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사회적금융 지원이 가능한 도소매 기금을 형성해야 함.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조성하는 사회적경제기금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 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관계형 사회적금융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지자체 주도의 도매기금을 마중물로 삼아 다양한 유형의 공급 채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사회적금융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있는 금융 인프라가 형성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과 관 주도의 금융 수요 공급 체계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금융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금 공급자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사회적금융생태계 진입을 꺼려 할 수 있음
- 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 금융권의 사회적금융 진입 장벽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평가 및 기대수익률 확보 방안이 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전북형 사회적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의 도소매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함.

□ 추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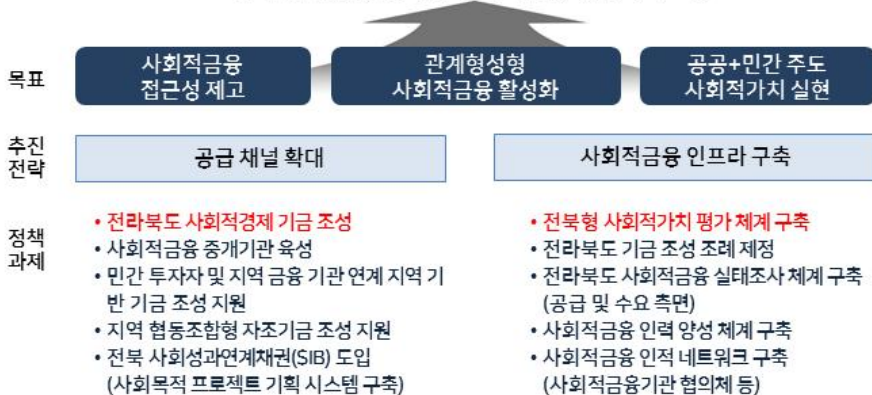
- 전라북도의 사회적금융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구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에 따라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첫 번째 목표는 사회적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함
 - 이는 사회적금융 수요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사회적금융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함을 의미함
- 두 번째 목표는 관계형성형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해야 함.
 - 사회적금융의 본래 취지는 사회관계 형성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의 중개로 투명한 거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세 번째 목표는 민관 합동형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 공공 주도로만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형성할 경우, 공공으로부터 구속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는 공공 주도로 시작하다가 궁극적으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사회적금융 공급을 할 수 있어야 함.

□ 추진 전략 및 세부 정책 과제

-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2가지의 추진 전략에 따른 세부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공급 채널 확대를 이룰 위해서 선도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임.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한 이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으로 다양한 소매기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해야 함.
- 두 번째 추진 전략으로 사회적금융 인프라 구축으로 이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사회적금융 공급자들의 투자 위험을 낮추고 기대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또한 전라북도 주도의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기금 조성 조례 제정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함.
- 선도 사업 이후,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실태조사와 사회적경제조직의 공시제 실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민관 중심의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지속가능한 전북형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그림 3-10]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생태계 활성화 방향

4

장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방안

Jeonbuk Institute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방안

제4장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방안

제1절 기본 방향

1.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필요성 검토

-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시장적 자본조달 방식과 비시장적 자본조달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시장적 자본조달의 대표적인 방식은 융자와 투자 유치이며, 비시장적 자본조달은 정부보조금과 모금 형식으로 이루어짐.
-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자본 조달 방식은 융자와 정부 보조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민간 중심의 투자나 모금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임.

[표 4-1] 사회적기업 대상 자본조달방식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기금	- 지원금 상환 불필요 - 수익 창출이 없는 활동에 지원 가능 - 자체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지원 가능 - 제도 금융권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회적, 공공 목적의 활동에 지원 가능	- 일 년 단위 단기 지원으로 장기 사업계획 마련 어려움 - 기업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 지원 받지 못할 가능성 존재 - 지원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 - 기금 신청, 승인, 사용까지 많은 시간 소요 - 신청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가능성 존재
융자	- 기금보다 사용이 자유롭고 빠르게 지원 가능 - 지원신청자에 대한 평가에 의해 지원 결정 - 기업의 재무관리, 수익 창출에 대한 동기 부여 가능	- 지원신청자의 자산 안정성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자산이 없을 경우 융자받기 어려움 - 이자 비용 지불 - 기업의 사업 초기에는 지원받기 어려움
투자	- 융자보다 대규모 자본 확보 가능 - 보증이나 담보 불필요 - 상환 의무 없음 - 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할 경우 전문성 확보 가능	- 투자자와 설립자간의 갈등 존재 - 사회적기업의 법적, 경영권 구조로 인해 투자 범위 제한 받음 -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보여주기 힘들

출처 : 이회수(2011)의 내용을 재정리

-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본 조달 방식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기업의 성격 및 역량 등에 맞는 자본 조달 방식을 고려해야 함
- 현재 사회적금융 생태계의 단점이 대출 중심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융자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를 실현할 수 있는 자금 공급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시키고 있고 앞으로 사회적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의 역량에 따라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것임.
-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금융 지원 제도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으나 자금 분배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화되고 있고 지방에서는 규모가 미미한 상황임.
-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핵심역량을 구축하고 지역 특화형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독립적인 투·융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로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 기금은 일반적 예산체제와 달리 특수목적활동을 위해 운용되는 재원으로 공공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기금은 집행부서의 재량권이 일부 보장되어 있고 목적사업내에서 담당 부서가 스스로 판단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적자금임.
-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조성된 기금 현황을 보면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억원 이내의 규모로 지역 차원의 기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
- 또한, 원금 보전을 전제로 운용하다 보니 단순 융자 중심의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어 인내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법상 지자체가 조성하는 기금의 경우 융자에 국한되어 있고 지분 투자 등 활발한 금융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필요로 하는 긴급자금조달인 소액 운영자금 용자에 대해서는 바로 실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 내 공급 확보 차원에서 정책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

[표 4-2] 기금 조성 주도 주체별 개요

	지자체 주도 기금	민간 주도형 기금	전통 금융기관
목적	-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자금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 당사자 혹은 시민이 자조기금 조성 - 당사자들의 운영자금 조달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융자 투자 -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례	-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 화성시, 전북 완주군	- 충북사회적경제기금, 광진협동기금 - 공공기관 사회공헌기금 - 사회혁신기금	- 거점신탁 - 지역신용보증기관 - 지방은행
특징	- 낮은 이자율로 운용 -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민간 참여 저조로 규모 확대가 힘들	- 민간공공기관 참여 늘어나는 추세 - 아직까지 자금조달 규모가 작음 - 지속운용 가능성에 의문	- 아직까지 재무적 측면 고려 비중이 높아 공급 규모가 작음

-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첫째, 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에는 매우 긴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음.
- 둘째, 기금은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고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 손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음.
- 셋째, 기금은 다양한 조달 방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원, 자체 자금 등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함.
 -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금리 보전, 신용보증의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음.

2. 사회적경제기금의 조성 가능성 검토

□ 전라북도 기존 기금 현황

- 전라북도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총 8,288.8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비용자성 사업으로 266.3억원, 융자성 사업으로 250.6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 하지만, 현행 기금들의 이자 수입 감소로 인해 안정적인 기금사업비를 확보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최근 시중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이자 수입이 감소하고 있음.
 - 따라서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향후 일반회계 출연 요구액이 증가하거나 기금 잠식 우려가 있음.
- 또한 대부분 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일반회계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기금은 기금관리법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금들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이전에 조성되어 일반회계에서 집행 가능한 사업들로 구성됨.
- 기금의 주된 기능 중 하나인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적립되는 경우가 많아 기금의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임
- 이러한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지자체 주도의 사회적경제기금을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구조 및 목적사업에 대한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상황임.

[표 4-3] 전라북도 기금 운용 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관리기금	2003	각종기금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활용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과
지역개발기금	1989	지역개발사업 지원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2005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예방활동과 공공시설의 보수보강	재난관리기금조례	자연재난과
농림수산물발전기금	1993	농림어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로 돈 버는 농어업 실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운용조례	친환경유통과
체육진흥기금	2004	전라북도 체육회 사업 및 활동지원과 지방체육진흥사업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체육정책과
환경보전기금	2000	환경보전개선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환경보전과
자활기금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의 재원 충당 및 자활지원사업 추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사회복지과
재해구호기금	1971	재해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로 이재민의 생활안정 도모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사회복지과
성평등기금	1997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성화 및 복지향상, 성평등 촉진사업 지원	성평등기본조례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1997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노인장애인 복지과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 및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건강안전과
혁신도시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2016	혁신도시 성과를 타 지역에 확산 및 균형발전에 기여	혁신도시 성과공유지역균형발 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83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업지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2008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국제협력과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지연에 따른 문제

-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이 2016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 2019년에 강병원 의원과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상태에서 계류 중에 있음

-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법안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현재 기금관리법 상 문제가 되고 있는 기금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 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즉, 현행 제도 상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한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전라북도 내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사회적경제기금의 신규 조성이 힘들다는 검토의견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절실한 상황임.
-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인 기금을 조성하는 것 이외의 다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검토

- 현재 전라북도의 기존 기금 현황, 2016년 개정된 기금관리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지연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크게 3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대안 1) 기존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 이 방안은 기존 기금을 사회적경제조직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목적사업 대상 평가에서 사회적가치평가 지표를 적용하는 방안임.
 -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기금을 신규로 조성하기 어렵고 기존 기금의 운용 효율이 낮아 신규 기금 신설에 부담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할 수 있는 방안임.
- 기존 기금 중에서 사회적경제와 접목할 수 있는 기금은 크게 5개의 기금임
 - 지역개발기금

- 도, 시군 및 지방공기업의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
 -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사회목적 프로젝트의 사회성과연계채권과 연계가 가능함.
 - 다만, 지원 대상이 도, 시군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도에서 주관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에만 접목이 가능
 - 예탁금 중 일부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포함되어 있음
- 농림수산물발전기금
-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경영 및 시설자금 지원 등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
 - 지원 대상 중에서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가 포함되어 있어 농수산물 유통 목적의 협동조합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원 대상이 개인이 아닌 법인까지 허용되어야 함
- 자활기금
- 자활기업 및 사업단 등 자활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자립 촉진 기능
 - 사회적경제조직에 자활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경제 기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다만, 향후 사회적경제기금의 신규 조성 시에 자활기금의 기능과 중복되기 때문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 노인복지기금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
 - 지원 대상이 노인 및 노인단체 사업 지원으로 복지형 사회적경제조직이 이 유형에 해당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선정은 공모를 통해 우수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 사회적가치 평가지표를 추가할 수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음.
 - 중소기업 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경제 기금의 일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이 제조업 전업률(제품매출액/총매출액)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이 어려움.

- 이들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가치 평가지표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 기금의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표 4-4] 기존 기금의 사회적경제기금으로서 활용 가능성 검토

기금명	사회적경제 접목 분야	사회적가치평가 지표 적용 가능성	활용 가능성
지역개발기금	사회적 부동산 개발 등 사회목적프로젝트의 SIB 발행	지자체 및 공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평가 지표를 적용하기 어려움	도내에 사회성과연계채권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활용하기 어려움
농림수산 발전기금	농수산물 유통형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아닌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함	대부분의 지원 대상이 개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회적가치평가지표를 적용하기 어려움	적용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려움
자활기금	지원 대상이 사회적경제조직에 포함되기 때문에 바로 접목 가능	자활기업 대상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일괄 적용 가능	담당 부서와의 협의 후 활용 가능
노인복지기금	노인 복지형 사회적경제조직 활동 지원에 적용 가능	비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적용 대상이 일부 충족되지만, 담당 부서의 협의가 필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중 제조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에 적용 가능	향후 기업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적가치 비중을 점점 확대하는 방식으로 적용 가능	적용 대상이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와 협의 후 활용 가능

- 사회적경제기금의 성격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5개의 기금 중에서 당장 적용이 가능한 분야는 자활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임
- 이 2개의 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할 경우,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등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함.
- 하지만, 향후 사회적경제기금의 지원 대상을 사회적경제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략산업과의 연계 제조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고령화에 대응한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을 주 목적으로 하게 될 경우, 대안 1의 방식으로 운영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임.
- 노인 복지 지원형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민간 금융의 지원을 받기 힘들고 보조금 지원 방식이 적합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금 지원 취지에 맞음

□ (대안 2) 기존 기금의 일부를 떼어내 사회적경제기금을 신규 조성하는 방안

- 대안 1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면,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안임
- 기존 기금의 일부를 떼어내는 방식은 대안 1에서 접목이 가능한 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자활기금의 일부를 떼어내는 방식임
 - 기금 일부를 사회적경제기금에 위탁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
- 자활 기금의 경우 기금 조성기반이 국비이고 융자성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활기금은 사회적경제기금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방안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함.

□ (대안 3) 기존 기금 중 일부를 통폐합하여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 이 방안은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 집행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기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금을 대상으로 통폐합하여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임
- 통폐합이 가능한 기금으로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남북교류기금임

- 기존 기금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기금과 관련된 관계자 및 단체들의 반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회적경제 지원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기금을 통폐합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이에 부합하는 기금은 농림수산물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될 것임.
-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금 담당 부서와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조례 개정 및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함.

□ 대안별 장단점 검토

- 대안 1의 경우는 기존 기금에 사회적가치평가지표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 없이 사회적경제기금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기존 기금의 지원 대상자들의 반발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가치평가지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또한 대안 1로 진행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조직 중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대안 2의 경우는 기존 기금 일부는 떼어내 신규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대안 1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독자적인 기금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음.
- 하지만, 기존 기금으로부터 예탁금 형식으로 떼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금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

- 대안 3은 기존 기금들을 통폐합하여 신규로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대안 2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 없이 사회적경제기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음
- 하지만 기존 기금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금과 관련된 관계자 및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통폐합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는 낮음
- 각각의 대안들은 장단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으며, 대안1부터 시작하여 여건이 될 경우 대안 2나 대안 3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4-5] 기금 조성 대안별 장단점

	장점	단점
대안 1	- 추가적인 예산 확보 불필요	- 사회적가치평가지표의 일괄적인 적용 어려움 - 사회적경제조직 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
대안 2	- 추가적인 예산 확보 불필요 - 사회적경제기금으로서의 기능 가능	- 추가적인 자원 확보 필요 -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조례 제정 선행
대안 3	- 추가적인 예산 확보 불필요 - 사회적경제기금으로서의 기능 가능 - 전라북도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	- 기존 기금 통폐합 어려움

제2절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방안

1. 기본 방향

- 사회적경제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게 되었을 경우에 대한 기본방향임

□ 민관 합동형 기금 조성으로 추진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은 순수 공적기금으로 운영할 경우, 공공성에 따른 경직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현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자체 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기금 조성은 민·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초반에는 소규모라도 민간 기금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매칭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함.

□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적 기금의 활용 지향성

- 사회적 금융상품들이 현재도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하지만 활용이 미비한 원인으로 수요조사 결과는 공급자 중심의 기금활용 설계에서 원인을 발견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운영될 사회적 기금은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수요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금융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함.

□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 긴급소액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용해야 하며,
- 장기적으로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투자나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일반 중앙단위의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물적 담보 대신에 사전심사 및 현장실사와 사회적 성과에 기반한 평가시스템을 통해 대출을 결정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함.

□ 사회목적활동 투자지원

- 사회적 기금을 통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제도상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간접적 방식을 지향해야 함
- 투자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과 성과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신뢰할만한 사회적 성과평가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함

□ 전북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도입을 통한 운영

- 단기적으로는 전북 내 거점신협을 기반으로 사회적 금융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북도내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사회적 금융의 정보지원 및 기업관리지원

- 사회적경제 기금의 투융자 및 보증지원 외에도 지원기업 대상의 교육, 컨설팅 및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통합적 정보지원 등의 비금융적 지원사업도 병행되어야 함
- 우선 사회적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기업에 가장 적합한 재원조성 루트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 컨설팅이 필요함에 대해 실제 기업들의 많은 수요가 있음
- 따라서 사회적금융 운영기관(중개기관)에 중앙정부 및 민간, 전북 내 관련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금의 투융자는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제공받은 기업에 대한 금융 관련 교육과 경영컨설팅, 재무 관리 등의 효

과적 자금활용을 위한 재무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패키지 형식의 상품 개발을 추진해야 함

2.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주체

□ 단계별 운용 주체 전환 방안 검토 필요

- 사회적경제기금의 운용 주체는 사회적경제기금의 활용방안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의 기금이 외부 전문 업체가 아닌 공무원이 직접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금이 단순히 이차 보전의 목적으로 운용될 경우에는 기존 기금과 동일하게 총괄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되, 금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타당함
- 하지만, 사회적경제기금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이차 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기금의 확장성 측면에서 보면, 민간까지 기금 확보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줄이고 민관 합동으로 기금에 대한 책임 부여가 필요함
- 다만, 전라북도의 경우 아직까지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업계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영역을 끌어들이어 사회적경제기금을 단기간에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단기에는 공공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의 활용을 기금 유지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사회적금융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경제 기업 및 생태계에 전반적으로 조성된 중장기에는 사회적경제중개기관을 육성하고 민간까지 끌어들이어 기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단기) 전북 소재 은행을 통해 이차보전 중심 운용

- 전북 거점 신탁 혹은 전북은행 대상으로 전북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이차보전에 대해 기금으로 활용
- (중장기) 민관협력의 독립적인 지역공인재단 설립으로 기금 운용
 - 기금의 활용 범위가 사회적경제 전반적인 금융 지원으로 확대
 - 기금의 공급처가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

[표 4-6] 단계별 기금 운영 방안

	항목	단기	중기	장기
도매 기금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 공공(전라북도)	- 공공(전라북도, 시군)	- 공공(전라북도, 시군) - 민간(기업, 기부)
	운용	- 공공(전라북도) 일반 금융기관 위탁	- 공공(전라북도) 일반 금융기관 위탁	- 민관합작 법인
소매 기금 (민간자조기금)	주체		- 민간(기업, 기부)	- 민간(기업, 기부) -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운용		- 일반 금융기관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 일반 금융기관

□ 기금 운용 주체(민관합작)에 대한 검토

-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중후반부터는 기금을 운용하는 법적 형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적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7]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의 법적 형태별 장단점

	재단법인	사단법인	유한회사(자산운용사)
장점	- 시장이 기피하는 공공 목적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조세혜택, 사회적자원 동원,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에 유리함 -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은 사회적자본으로 사회공인목적 기금 운용 수단으로 적합함 - 다른 재단이나 창투사 등과 연계하여 투자펀드나 모태펀드에 참가가 가능함 - 사단법인과 달리 공익사업에 필요한 기부금 조성과 사회목적 투자 유치에 유리함	- 시장이 기피하는 공공 목적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금융과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약하나 사회적 마인드와 다양한 네트워킹 구성에 익숙함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경우, 법인 10%, 개인 30% 소득공제가 가능함 - 법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될 경우 법인 50%, 개인 100% 소득 공제가 가능함	- 소수의 출자자들로 경영되는 중소기업, 펀드, 투자회사 등의 기업 형태에 적합함 - 빠른 의사결정으로 사업진행이 원활함 - 금융분야 사회책임기업으로 설립할 경우 민간 주도형 혁신모델 개발이 가능함 - 단일 유형의 모태펀드 결성만 가능함 - PEF식 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함
단점	- 모태펀드 참가 자격이 없으나, 창투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추진이 가능함	- 참여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의사결정이 늦고 사단법인구조로 인해 책임성이 떨어짐 - 재단법인에 비해 기부금 조성과 사회목적 투자 유치에 불리함 - 모태펀드 참가 자격이 없음 - 투자조합 결성이 어려움	- SVC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투자성 SVC 조달 인프라가 취약함 - 국내 정서상 기부금 조성과 사회목적 투자유치에 불리함 - 단일투자조합만 결성이 가능하고 다모델조합 허용은 창투사 라이선스가 필요함 - 지역차원의 사례 및 경험 부족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음

○ 지역 내에서 민관 합작으로 사회적경제 금융을 주도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지만, 사회적금융에 대한 인식이 아직 까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다만, 유한회사의 경우 기존 기금 뿐만 아니라 펀드 및 채권 발생, 프로젝트 파인낸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설립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당장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 전북개발공사 등의 출연기관들의 출자 형식으로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5

장

전북형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 방안

Jeonbuk Institute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세부 사업 내용

제5장 전북형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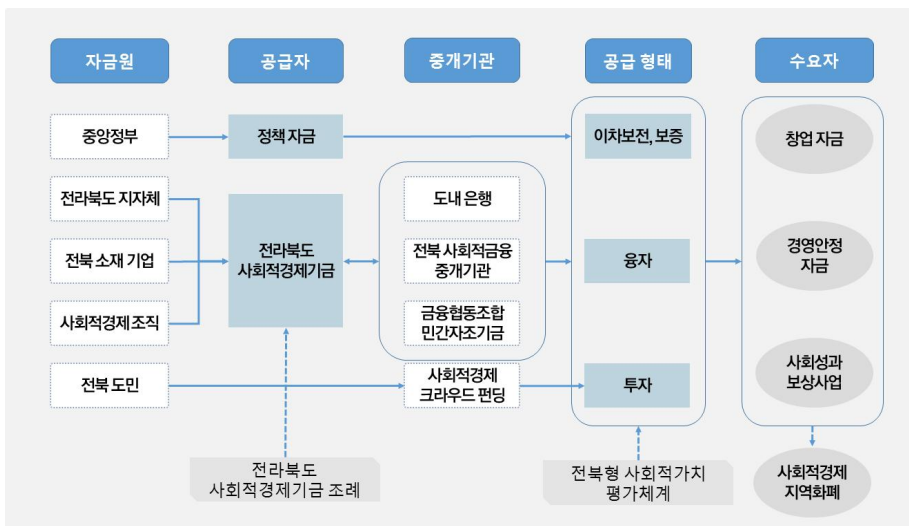
제1절 기본 방향

1.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성원

- 전북형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의 구성원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 공급원으로서 중앙 정부 및 전라북도 소재 시군을 포함한 공공 부문과 사회적경제 금융의 수요자이면서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조직과 일반기업 및 도민 등을 포함한 민간 부문으로 나눌 수 있음
 -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공급자로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정책자금과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등의 공공기금과 일반 투자자로 구성됨
 - 세 번째는 중개기관으로 금융기관과 민간자조기금 및 전북형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활용하여 수요자에게 금융 지원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임팩트 투자를 포함한 민간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사회적경제 크라우드 펀딩 사업으로 구성됨
 - 네 번째는 수요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공급 형태로 기존 기금과 같이 상호보증 및 이차 보전 중심의 소극적인 지원 형태에서부터 융자, 투자로 확대할 수 있음
 - 다섯 번째는 사회적금융의 수요자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 경영자금 및 사회성과보상사업 등의 사회적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들 구성원간의 자금 흐름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 2가지가 있음
 - 첫 번째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
 - 두 번째는 중개기관이 수요자에게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한 의사 결정과정에서

수요자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북형 사회적가치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금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할 때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무적 측면에서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은 금융지원 혜택을 적게 받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 가치 측면을 확대하고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업 여건에 맞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사회적금융의 기본적인 방향은 가치지향적, 관계지향적, 임팩트지향적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자금 흐름이 일반 화폐단위가 아닌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지역화폐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5-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성

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 로드맵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4가지 방향에서 추진 사업을 제시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사업으로 공공 주도형 기금 조성 사업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스스로 기금을 만드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공 주도형 기금 조성 사업은 서울이나 화성과 같이 지자체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함
 -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스스로 기금을 만드는 사업은 충북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이 직접 개입은 하지 않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소규모로 조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만, 아직까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공공 지원에 익숙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금융 수요가 전라북도와 시군 매칭의 기금만으로 감당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금융 협의체 등을 통해 민간자조기금을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는 중장기 시점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및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①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② 사회적가치평가체계 구축, ③ 사회적금융 협의체 운영, ④ 사회적경제 금융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라북도에는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제14조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 및 기금 설치운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하지만,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조례 뿐만 아니라 기금의 활용 및 민간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의 당위성을 따지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연구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또한 사회적금융에 대한 수요 및 기금의 활용 방향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으로 금융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8조의 실태조사에서 좀 더 상세한 조사 문항 추가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전북 금융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세 번째는 기금 운영 역량 강화 사업으로 기금을 통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반 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 현재 지방재정법 상에서는 기금의 운용을 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관계로 기금의 원금을 보전하는 선에서 소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단기 사업으로 도내 은행권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중심의 신용 보증형 상품을 개발하여 기금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전북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설립하게 될 경우, 사회적경제 기금을 기관 출연금으로 활용하되 기관 구성원이 금융 전문 인력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아울러 '전북형 사회적은행' 혹은 '전북형 사회투자 전문회사' 설립을 위한 중장기 연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마지막은 기금의 운영 대상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기금 조성 이후, 사회적경제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기금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내용으로 구성됨

- 이자 이차보전 뿐만 아니라 융자,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함
-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목적투자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과 사회적경제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

[표 5-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 로드맵

전 략		단기		중기		장기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100억원)						
	공공(전라북도, 시군) 50억원					
	민간(공공기관, 재단 기부 등) 50억원					
	사회적경제 민간자조기금					
제도, 체계 구축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					
	사회적가치평가체계 구축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실태조사					
	사회적금융 협의체 운영					
	사회적경제 금융아카데미					
기금 운영 역량 강화						
	도내 은행권 이차보전 중심					
	사회적금융 전문 컨설턴트 육성					
	전북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설립					
기금 운영 대상 확대						
	소액 단기 융자사업					
	고액 장기 융자사업					
	사회적경제 크라우드 펀딩					
	전북형 SIB 도입					
	전북 (사회적경제) 지역화폐 도입					

제2절 세부 사업 내용

1.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 목적 및 필요성

- 전라북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 금융 환경을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적 기금 조성 필요
-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이 자유롭게 사회적경제에 기부투자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공공 차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 필요
- 중앙정부 지원과 별도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회적경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지역의 사회적경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의 첫 단추로서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필요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4조 (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 추가 제정 필요 법령
 - 사회적경제기본법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

□ 사회적경제기금의 용도

- 긴급소액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우선 지원
- 민간 투자자의 자금 공급 유인
- 장기 저리의 대출상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결합 대출상품 제공

- 장기적으로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기업 대상으로 투자나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일반 중앙 단위의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개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투융자에 매칭 혹은 후순위 투자

□ 사회적경제기금의 조성 방식

- 민관 합동형 기금 조성으로 추진
- 순수 공적기금으로 운영할 경우, 공공성에 따른 경직성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현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자체 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기금 조성은 민·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초반에는 소규모라도 민간 기금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매칭 하는 방안으로 추진

□ 사회적경제기금의 운용 방식

- 물적 담보 대신 사전 심사 및 현장 실사와 사회적 성과에 기반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 대출을 결정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운용
- 사업추진절차
 - 2020년 : 기금 조성 방안 대안별 장단점 검토 및 기금 조성 계획 수립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 제정에 따른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 수립
 - 2021년 :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에 따른 기금 설치(25억 규모 계획)
시군별 사회적경제 기금 매칭 참여 협의(25억 규모 계획)
 - 2022년 이후 : 지역 내 민간 재단 및 금융기관 기금 매칭 형식으로 참여 (50억 규모 계획)

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 수립

□ 목적 및 필요성

-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공공 재원 중심의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원금 보장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이자율 측면에서 비신축성 모습을 보이는 등 보수적 운용으로 융자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투자기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제한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의 후발 주자로서 사회적경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사용 및 회수를 통해 기금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기금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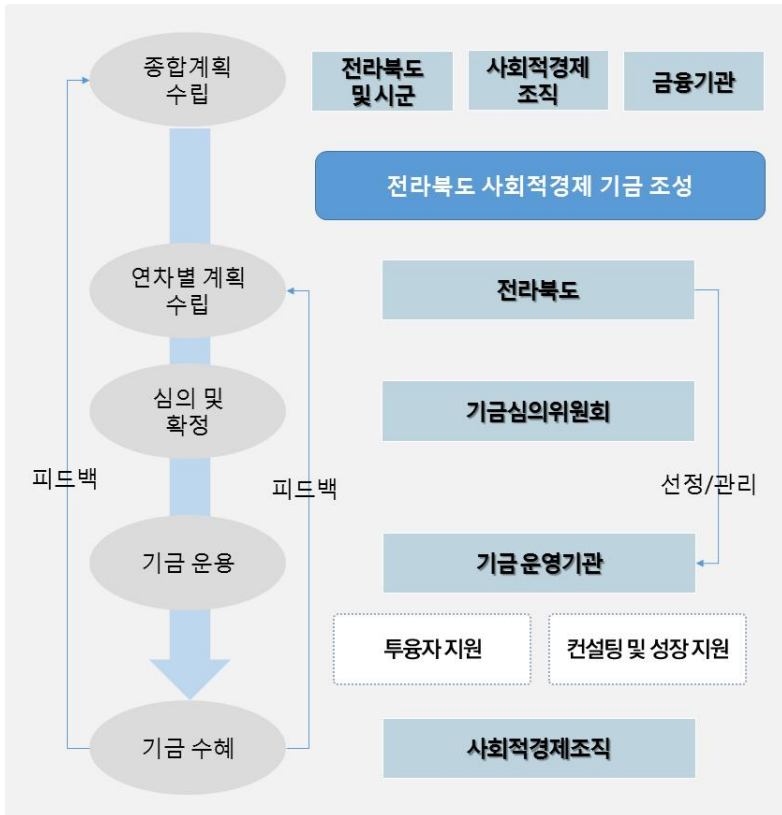
□ 기금 조성 및 운용 종합 계획의 주요 내용

- 기금 설치 개요
- 기금 운용의 비전 및 목표
-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
- 재원 조달 방안
- 기금 지원 기준 및 대상 선정
- 기금 운용의 성과 지표(정량적, 정성적 목표) 설정
- 기금 활용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 계획

- 기금 운용의 추진 체계(기금 지원 프로세스 구축 계획)
- 기금용도 및 상환조건 설정
-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연차별 기금운용실행계획

□ 추진 체계

-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민·관·정 사회적금융협의체
- 연차별 기금운용 실행계획 : 전라북도
- 종합 계획 및 연차별 기금운용 실행계획 심의 및 확정 : 기금심의위원회



[그림 5-2] 기금 운용 계획 수립 체계

3. 사회적경제 민간 자조기금 조성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공공 중심의 기금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공공의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금 중심의 기금이 다양하게 조성될 필요가 있음
- 충북사회적경제기금과 같이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스스로 자조기금 혹은 공제조합을 만들어 관계금융 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공제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기존 협동조합
- 지원내용
 - 공제사업의 안정성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및 기금 지원
 - 공제사업 설계 및 공제 상품 개발 자문
 - 상품 설계 대행, 자산 운용 협력 (신탁, 농협 지원)

4.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15.7.24)에 따라 지방기금의 운용 및 관리의 민간 위탁이 금지되면서 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체단체의 책임이 강조됨
- 향후 사회적경제기본법 내 사회적경제발전 기금 조성 근거가 마련되고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는 등 사회적경제 기금에 대한 우호적인 법 제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금의 필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금의 조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듦으로써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음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4조 (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 추가 제정 필요 법령
 - 사회적경제기본법

□ 조례의 주요 내용

- 기금의 정의, 용도
- 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 기금의 관리 방안, 존속기한 등을 포함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기금 조성을 위한 다양한 비영리재단, 신탁 등 사회적금융기관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 추진 체계

□ 사회적경제기금 확대에 따른 조례 개정 추가 내용(안)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클라우드 펀딩 조성, 사회적경제 민간 자조기금 조성 지원체계
- 전북 사회혁신채권 발행을 위한 자금원 조달 방안 및 사회보상사업 추진 체계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지역화폐 지원 체계
-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및 지원체계

5. 전북형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구축운영

□ 목적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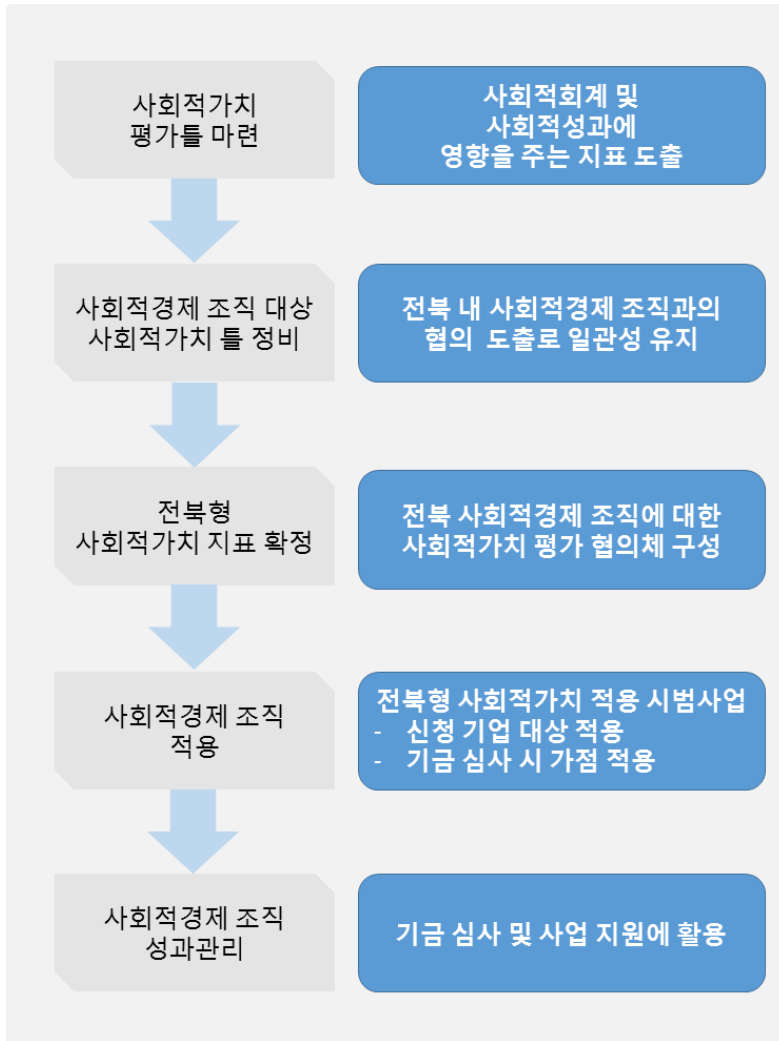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가치 평가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최근 사회가치, 사회적 성과 평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시도가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향후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북의 산업·경제 구조를 반영한 사회적가치를 계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전라북도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평가목적
 - 전북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성과를 알리기 위한 공식 지표로 활용
 - 기금 및 민간 금융 지원의 우선 순위 선정을 위한 지표로 활용

□ 추진절차

- 2020년 하반기 : 전북형 사회적가치 평가 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2021년 상반기 : 전북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상 평가 지표(안) 검토
- 2021년 하반기: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
- 2022년 이후 : 매년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 및 사회적 성과간 피드백



[그림 5-3] 전북형 사회적가치평가체계 추진 절차

6. 전라북도 사회적금융 실태조사

□ 목적 및 필요성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금의 필요성 및 수요 파악을 위해서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금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금 운용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금 조성 및 운용 단계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이 도래할 경우, 이에 대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확보하고 기금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 기금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함

□ 조사내용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금융 지원 관련 설문조사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금융 지원 규모별 성과 분석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 성과 분석
- 기금심의위원 및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기금 관련 의견 조사

7. 사회적금융 협의체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 주도의 기금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조합의 역량 강화 및 일반 금융기관의 사회적경제 활동 및 금융지원 기반을 강화해야 함
- 즉,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 사회적경제 조직 뿐만 아니라 사회적금융 조직과 민간 금융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임
- 전라북도 사회적금융과 관련한 이슈(기금 활용, 사회가치평가체계, 사회적금융 교육)와 관련하여 논의 공간을 만들어 주요 쟁점들을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 사회적금융 협의체 구성원

- 사회적경제조직 당사자 대표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과
- 전북 소재 민간 금융 기관(전북은행, 신한, 농협, 신용보증기금 등)
- (중장기)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민간 자조기금 운영위원회

□ 사회적금융 협의체 논의 안건

- 전북 사회적경제 기금 중장기 운영 방향
- 전북형 사회적가치평가 지표 구성 및 활용 방안
- 기금-민간 금융기관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
(신용보증기금 지원 방안, 민간 금융기관의 영업력 확대 방안 등)
- 전북 사회적경제 조직의 금융지원 확대 방안
- 민간 기부 활동 활성화 방안
- (중장기) 전북 사회적경제 지역화폐 도입 및 운영 방안

8.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공시제

□ 목적 및 필요성

- 공시제도란 기업의 영업실적, 재무상태, 증자 등 중요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정기·수시적으로 공개하여 투자자 스스로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 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 중 공시의사를 가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율경영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2019년 3월 기준 481개의 기업만이 참여하고 있음
- 전라북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에서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여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가치평가체계 구축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공시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공시제 목적

- 전라북도 소재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대한 홍보를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 사회적기업 스스로 성과를 정리하도록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투자에 대한 판단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 공시제 주요 내용

- 주업종 및 주업태, 주품목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유형
- 이사회 구성 및 개최 시기
- 지분 구성 현황
- 고용 현황(취약계층, 비취약계층) 및 임금 수준, 근로시간
- 재투자 현황
- 기업 경영 현황(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 공시제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금 지원에서 우선 지원 대상
- 우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에서 가점 부여
- 기업 홍보에 대한 행·재정 지원

□ 추진 절차

- 1단계 :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협의체에서 공시제에 대한 여론 형성, 전북 소재 사회적기업 대상 제도 홍보
- 2단계 :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공시 자료 관리 및 운영 체계 구축
- 3단계 : 공시 자료 축적에 따른 기업 경영 컨설팅 시스템 구축

9. 사회적금융 전문 컨설턴트 육성

□ 목적 및 필요성

- 금융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 및 성과 창출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 은행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금융 지원 상품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회적경제 조직의 금융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도내 대학의 금융 관련 학과
- 지원내용 : 기존 금융 전문 인력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금융 학과 내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관련 교육 커리큘럼 운영
 - 사회적금융 상품 개발 및 사회적투자

10. 전북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 목적 및 필요성

- 사회적 투자자와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자금의 공급과 수요의 중개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상호 간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혁신적인 금융수단과 기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적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심각한 사회문제를 여러 사회적기업들이 협력하여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전라북도는 사회적금융 사업이 클라우드 펀딩 조성 지원, 지역화폐 발행, 사회성과보상사업 등으로 확장될 경우 사회적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고자 함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지정 방식

- 1단계(사회적경제 기금이 용자 사업 위주로 진행될 경우)
 - 전북 거점신탁 및 지역 단위 시중은행은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중개기관의 역할 수행하도록 함
- 2단계(사회적경제 기금 영역이 사회적금융 전반적인 사업까지 확대)
 - 민관거버넌스형으로 지역 재단 설립
 - 도와 시군비로 공익재단의 씨드머니로 활용하여 사회적금융 사업 추진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기능

- 사회적금융 전문 컨설턴트 육성
- 전북 사회적경제 기업 공시제 관리
- 전북형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운영
- 사회적경제 민간 자조기금 조성 지원 및 컨설팅
- 전북 사회적경제 클라우드 펀딩 조성 지원 사업 운영
- 전북 사회성과연계채권 발행 및 사회성과보상사업 기획
- 전북 사회적경제 지역화폐 유통을 위한 청산소 기능

11.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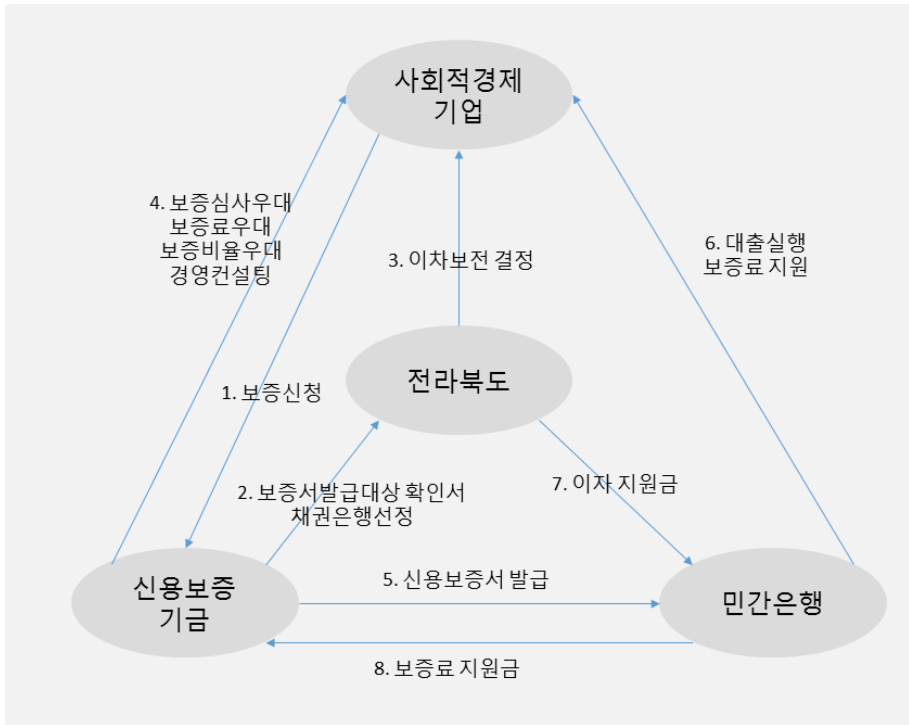
- 전라북도에 자체적으로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에게 대출금리 중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금융채무 등 자금계획과 사용에 있어서 열악한 수준에 있어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민간금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자금 확보 및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전라북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 대출 금액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3억원
 - 마을기업, 자활기업 : 1억원
- 지원내용 : 민간금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을 할 경우, 추가 대출금리 감면을 위한 이차 지원금 지원
 - 보증기간 : 사회적기업 3년/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2년

□ 지원체계

- 전라북도 :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하여 이차보전자금 심사 및 지원 우대, 대출이자 지원
- 전북신용보증기금 : 보증비율 및 보증료를 우대, 경영컨설팅 지원
- 민간은행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 실행, 추가 대출금리 감면, 보증료 0.3% 지원



[그림 5-4]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체계

12. 전북 사회적경제 클라우드 펀딩 조성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공공 기금은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용자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
- 성장 단계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어야 하며,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펀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전라북도 역시 중장기적으로 사회적금융 생태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게 될 경우,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클라우드 펀딩 문화를 형성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펀딩 조성에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클라우드 펀딩 조성 기업 10개
- 지원내용
 - [교육 지원] 펀딩 성공을 위한 최신 트렌드 등 전문 MD 교육
 - [콘텐츠 제작 지원] 상품 이미지, 웹포스터, 스토리페이지 제작 등 클라우드 펀딩 수행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비용 지원
 - [홍보 지원] 펀딩 성공을 위한 통합적 홍보 수행
펀딩플랫폼,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기사, 포스터 등 홍보자료 제작
각 기업 홍보용 랜딩 페이지 개설
 - [비용 지원] 펀딩 금액에 따른 리워드 제작비 및 수수료 일부 지원
기업별 최대 2천만 원 지원
 - [기타 지원] 유형별 성장 지원 프로그램 진행

□ 추진절차

- 1차 서류 심사 : 공익성, 사업성, 펀딩 성공 가능성 판단
- 2차 현장 심사 : 제출서류 사실 확인, 사업 현장 확인
- 3차 대면 심사 : 공익성, 사업성, 펀딩 성공 가능성 판단

13.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

□ 목적 및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공공 재원의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서비스 부문에 민간 재원을 끌어들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 지원 구조 마련이 필요함

- 민간 투자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가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 성과를 사회성과연계채권(SIB)으로 구매하는 내용인 사회성과보상사업이 행정안전부 주도로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음
- 전라북도는 사회적경제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용자 중심에서 다양한 기금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국회 계류 중)

□ 추진 절차

- 1단계 :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수립
 - ① 전라북도 사회성과보상사업 대상사업 발굴
 - ② 전라북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지침
 - ③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 ④ 사회성과보상사업 평가보상 체계 마련
- 2단계 : 사회성과보상사업 시범사업
 - ① 사업 분야 및 대상사업 선정
 - ② 세부 사업계획 수립
 - ③ 의회 동의(보증채무부담행위로 추진 시)
 - ④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 ⑤ 평가기관 공모 및 선정
 - ⑥ 사업 추진(운영 기관의 투자 유치)
 - ⑦ 평가 실시(사업 완료 후 성과에 대한 평가)
 - ⑧ 성과보상금 지급(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성과보상금 지급)

14. 전북 (사회적경제)지역화폐 도입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내 생산이 지역민으로 소득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라북도의 소득 유출 방지 차원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상품·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 등이 순환되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이 거론되는 지역상품권과 달리 지역화폐는 화폐, 신용 등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실물화폐를 이용하지 않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가상의 거래단위 사용체계임
-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거래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상호교차구매의 활성화와 현금흐름의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자 함

□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지역화폐 거래 시스템 개발
- 신용교환시스템의 문제점을 중재·조정하는 기구로서 청산소 설치

□ 추진체계

- 1단계 : 전북 사회적경제 지역화폐 도입 기본계획 수립
 - ① 블록체인 적용 방안 검토
 - ② 사회적경제 분야 지역화폐 도입 수요 검토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공시범사업(전북 지역화폐 ‘All@전북’) 확대 방안 검토
 - ④ 지역 화폐 유통 개념 정립(화폐 수급 및 소멸 방식 등)
- 2단계 : 시범 운영
 - ① 전북 사회적경제 특구 혹은 도내 시군 대상 시범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② 시군비 매칭으로 운영

부록

-
1.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
 2.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금융 관련 내용

〈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운용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치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기업이나 단체로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규정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포함한다.
4. “사회적경제금융”이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을 말한다.
5. “사회적금융기관”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북도의 출연금
2. 전라북도 소재 시군의 출연금
3. 전라북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한 민간 기업 및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사회적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하여야한다.

② 기금은 전라북도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전라북도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실·국장
2.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제6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담당업무과장
2. 기금출납원: 담당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금융 관련 내용 〉

	내용
유승민 의원안	3장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제17조(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의 조성)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2.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 3. 정부의 출연금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지원 3.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 4. 민간의 자발적 사회적 금융 조성 및 이에 대한 투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 19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경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운용심의소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소위원회(이하 “심의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용
윤호중 의원안	4장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제26조(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원리에 적합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회적금융 육성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사회성과연동채권 등 새로운 금융 상품의 개발 2.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 3.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4.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여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 정비 및 상품 개발 5.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설립 등 신탁법상의 상호금융이나 비영리민간재단의 사회적경제조직 투자 허용 등 관련법제의 정비 6.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회적금융제도의 정비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한다. ④ 정부는 사회적경제발전전에 필요한 민간 사회투자기금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27조(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과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지역·업종·부문·전국단위로 협동조합 금융, 사회적경제공제기금, 비영리민간재단 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개인·법인·단체 등이 의출자·융자·투자·기부를 통해 사회투자 민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편의 및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설립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들에 출자, 융자, 온랜딩, 융자사업 위탁 등의 방법으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들이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과 배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사회적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융자 또는 무상지원 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한 투·융자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사업

	내용
	4. 사업경영상 위기시의 긴급구제 금융사업 5. 사회적경제 투융자에 따른 손실 보상 지원사업 6.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운용과 업무의 위탁 7. 사회적경제공제기금의 위탁운영사업 8. 사회적경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기금조성사업 ⑤ 사회적금융기관으로 인증·지정된 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지정 및 재정지원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수입으로부터의 전입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2항에 따라 별도의 지역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지역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융자 등 금융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 및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4.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사회 금융기관의 역량강화사업 5. 사회적경제 공제기금 등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적 금융 조성 및 이에 대한 투자 6.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사회적투자 기준에 관한 사항 7. 기금심의운영위원회가 정한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내용
	제30조(기금의 운영 및 관리)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기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관리하며 지역기금은 시도지사가 운영·관리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금심의운용위원회의 운영관리방침에 따라 각각 기금과 지역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각각 보고한다. 제3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소속으로 독립적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건전성 감독 등 지속가능성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조성과 운영을 분리하여 기금조성 및 관리감독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기금운영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전달체계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호금융기관 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에 위탁·운영하도록 한다. ⑤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구성할 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 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사도 지역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중앙의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⑦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금의 관리·운영·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민간기금의 조성) ① 사회적금융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사회투자기금인 민간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투자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법인·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편의와 세제상의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기금은 제28조에 따른 기금과는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④ 민간기금의 조성 절차와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강병원 의원안	4장 사회적금융의 활성화 제22조(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원리에 적합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내용
	② 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회적금융 육성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 지원 3.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4.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사회적금융제도의 정비 제23조(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의 지정과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각 호의 기관, 「새마을금고법」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청을 받아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투자, 융자, 보증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과 성장자원을 위한 투·융자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투·융자 사업 4. 사업경영상 위기 시의 긴급구제 융자사업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창업과 성장지원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경제지원 중개기관(이하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⑥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의 지정·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민간투자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조직 및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금, 투자조합 등을 결성·설정·설립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연구 보고서

- 김양우,김자혜(201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 발전방안: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경기본부
- 박상하(2015), 광주지역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지역개발 연구. 제47권 제2호.
- 박종현,김낙현(2015), 경남지역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회적금융 발전 방안, 한국은행 경남본부
- 박춘섭(2018), 충청남도 사회적은행 개설 및 육성방향, 충남연구원, Issue Report
- 박춘섭 외(2016), 충남 사회적금융 체계의 구축과 운영방안, 충남연구원
- 서봉만, 서휘원(2014), 인천시 사회적 금융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양준모(2015), 강원도 사회적금융 도입 및 효율적 운영 방안, 한국은행 강원본부
- 이인우(2016),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의 필요 구조와 사회적경제 기업의 형태별 재무구조
- 이준호(2015), 사회적금융의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현주(2017), 충북지역 사회적경제기금 단일사례연구, 보건사회연구, 37(1)
- 장종익(2018), 한국 사회적금융 발전의 특징과 과제, 신탁중앙회, 신탁연구
- 전지훈(2018),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issue Report
- 정희준, 강영대(2019),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 한국은행 전북본부

- 조복현, 김수립(2019), 대전충남지역의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자금의 구성과 배분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조승현(2018), 전라북도 농생명금융 기초기반 연구, 전북연구원
- 최준규(2018),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측정, 경기연구원, GRI FOCUS, Vol.14

□ 단행본 및 기타 문헌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3), 사회적 금융의 운영현황 및 시사점
- Marguerite Mendell(2017), 퀘벡 사회적 책임 금융 -연대자금과 개발자본
- 강성일(2019),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
- 관계부처 합동(2018),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 금융위원회(2017),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향
- 금융위원회(2018), 2018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2019), 2019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보도자료
- 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6), 사회적금융론 교안
- 이철현(2014), 캐나다 퀘벡주의 사회적 경제 정책분석을 위한 출장보고서
- 이희수(2011), 사회적경제와 지역기금 조성방안
- 장지연(2019),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과제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2019), 사회적경제기업 분석가이드

정책연구 2019-24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 방향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19년 11월 30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SBN 978-89-6612-275-2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